

세이브더칠드런 어셈블

ESG 기후위기 대응 아동권리 지표 가이드라인



세이브더칠드런



녹색전환연구소^{igt}

CONTENTS

미래세대를 위한 지속가능경영을 묻다	05
---------------------	----

01. 들어가며	09
----------	----

02. 기업의 기후대응, 아동의 눈으로 다시 보기	13
-----------------------------	----

03. 기업의 기후위기 책임	19
-----------------	----

04. 나가며	49
---------	----

미래세대를 위한 지속가능경영을 묻다



어셈블 권순민 · 정하영 운영진

우리는 기후위기가 단순한 환경 문제가 아니라 아동권리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폭염과 집중호우, 대기오염과 같은 기후재난은 아동의 건강과 안전, 교육환경, 놀이와 일상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특히 아동은 성인보다 기후위기에 더 취약하며, 앞으로 살아갈 시간이 더 길기 때문에 기후위기의 영향을 더 오래, 더 크게 경험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후위기 대응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아동과 미래세대의 의견은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기후위기 대응에 대해 목소리를 내며 미래세대의 관점에서 필요한 변화를 이야기하는 아동·청소년 참여 모임인 세이브더칠드런 어셈블 청소년들은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기후위기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기업은 미래세대를 위해 어떤 책임을 지고 있을까?”라는 질문을 던지게 되었습니다.

이 질문은 기업들이 최근 사회적 책임과 지속가능경영을 중요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흐름 속에서 출발했습니다. 이에 국내 시가총액 상위 50개 기업 가운데 아동의 삶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20개 기업의 지속가능경영 보고서를 살펴보면, 기업들이 아동을 고려한 기후대응과 지속가능성을 어떤 방식으로 설명하고 있는지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보고서를 읽으며 우리는 한 가지 공통된 한계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환경과 탄소중립, 사회공헌, 노동과 지배구조에 대한 내용은 다뤄지고 있었지만, 기후위기의 영향을 가장 오래 경험하게 될 아동과 미래세대에 대한 내용은 매우 제한적으로만 담겨 있었습니다. 실제로 아동을 주요 환경 이해관계자로 명시한 기업은 없었고, 기후위기 대응을 아동권리의 관점에서 접근한 사례 역시 거의 찾아보기 어려웠습니다. 많은 기업들이 미래세대를 위한 지속가능경영을 이야기하고 있었지만, 정작 미래세대인 아동은 지속가능경영 안에서 여전히 ‘보이지 않는 이해관계자’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지표 개발 활동과 함께 지구의 날 캠페인과 성명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캠페인을 준비하며 “기업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달해야 할까”를 함께 고민했고, 그 과정에서 △지속가능경영 보고서에 아동을 주요 환경 이해관계자로 포함할 것, △미래세대를 위한 기후위기 대응 커뮤니케이션을 강화할 것, △아동 환경영향평가 및 아동 참여형 실사를 의무화할 것, △기후위기가 아동권리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할 수 있는 제도와 지표를 마련할 것 등을 주요 메시지로 제안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문제를 제기하는 데 그치지 않고, 기업의 기후대응과 지속가능경영 속에 아동권리를 실질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기준을 만들고자 ESG 기후위기대응 아동권리지표 개발 활동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지표를 만들기 위해 우리는 먼저 국내외 ESG 기준과 기업의 지속가능경영 사례, 아동권리 관련 자료들을 조사했습니다. 또한 다양한 기업의 지속가능경영 보고서를 비교·분석하며 기업의 기후대응 전략과 지속가능경영 전략 속에 아동권리가 얼마나 반영되어 있는지를 정리해보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기업의 사회공헌 활동이나 일회성 캠페인을 넘어, 실제 생산 활동과 경영 전략이 아동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 지표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특히 우리는 세 가지 질문을 중심으로 지표를 고민했습니다.

첫 번째는 “기업은 아동을 주요 환경 이해관계자로 인식하고 있는가”였습니다. 우리는 아동이 기후위기의 가장 큰 피해자이면서 동시에 현재와 미래의 소비자이며, 더 나아가 노동자와 투자자가 될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업은 아동을 단순한 보호의 대상이 아니라, 실제 경영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중요한 이해관계자로 바라봐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두 번째는 “미래세대를 위한 기후위기 대응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고 있는가”였습니다. 미래세대를 위한 지속가능경영이라면, 아동과 청소년 역시 기업의 기후대응 정보를 이해하고 알 권리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많은 지속가능경영 보고서는 전문적인 용어 중심으로 작성되어 있어 아동과 청소년이 이해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업이 아동과 미래세대의 눈높이에 맞는 방식으로 정보를 제공하고, 아동·청소년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소통 구조를 마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세 번째는 “기업이 아동 환경영향평가와 아동 참여형 실사를 진행하고 있는가”였습니다. 기업의 생산 활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오염과 유해물질은 아동의 건강과 발달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환경영향평가 역시 아동의 관점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아동의 의견과 경험이 실제 평가 과정 안에 반영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또한 지표 개발 과정에서는 다양한 전문가 및 기관과 함께 논의를 이어갔습니다. 녹색전환연구소와는 국내 주요 기업의 지속가능경영 보고서를 함께 분석하며 지표를 공동으로 개발했고, 마크스폰과는 실제 지속가능경영 평가 체계와 기업 경영 환경 속에서 어떤 방향이 현실적으로 적용 가능할지 고민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일회성 캠페인을 넘어, 실제 기업의 지속가능경영에 반영할 수 있는 기준을 만들어가고자 했습니다.

우리는 지속가능경영이 단순한 형식적 보고를 넘어, 미래세대의 삶과 연결된 책임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아동은 보호의 대상에 머무르는 존재가 아니라, 현재와 미래를 함께 살아가는 중요한 권리 주체이자 이해관계자로 존중받아야 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이 가이드라인은 이러한 고민과 활동의 과정 속에서 만들어졌습니다. 우리는 이 가이드라인이 기업에게는 아동권리를 고려한 기후대응의 새로운 시작점이 되고, 아동과 미래세대에게는 자신의 권리를 이야기할 수 있는 하나의 목소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앞으로 더 많은 기업과 사회 구성원들이 기후위기 속 아동의 권리에 관심을 가지고, 미래세대와 함께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한 논의를 이어가기를 기대합니다.

※ 본 가이드라인은 세이브더칠드런 어셈블 운영진, 세이브더칠드런, 녹색전환연구소가 공동으로 개발하였으며, 서문은 권순민·정하영 운영진이 작성하였습니다.



세이브더칠드런 어셈블(Earthemblem)은 국제아동권리 NGO 세이브더칠드런이 운영하는 기후대응 아동·청소년 참여 모임입니다. 아동·청소년이 기후위기를 아동권리의 관점에서 이야기하고, 기후대응의 주체로서 정책 제언과 캠페인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어셈블 홈페이지
바로가기 QR코드

요약

세이브더칠드런은 아동권리를 기업의 ESG 경영 전반에 반영하기 위해 민간 싱크탱크 녹색전환연구소와 함께 'ESG 기후위기 대응 아동권리 지표'를 개발하였으며, 관련 사례를 함께 수록하여 기업이 기후위기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아동권리를 반영하도록 돕고자 합니다.

본 가이드라인은 기업 ESG 보고서에 명시된 업무를 수행하는 모든 실무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기후위기로 인한 변화가 국내외에서 뚜렷이 체감되는 지금, 기업이 온실가스 배출 및 각종 환경오염에서 자유롭다는 인식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기업의 기후위기 대응 전략은 환경 영역에만 머무를 수 없습니다. 기업이 기후위기에 대응한다는 것은 폭염과 장마로 인한 사업장 인근 안전사고 증가를 예방하는 일(사회 영역)이자,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해 기업의 의사결정 구조와 이해관계자 참여 방식을 정비하는 일(거버넌스 영역)까지 포괄합니다.

기업 실무자는 기후위기 대응과 아동권리 보호를 ESG 보고서의 환경(E)이나 사회(S) 영역에 한정해 다루기 쉽습니다. 그러나 두 사안은 지속가능성 관점에서 기업의 의사결정 전반을 좌우하는 중대한 의제입니다. 환경 영역은 주로 정량 지표로 표현되지만, 글로벌 ESG 공시 기준과 투자자를 비롯한 이해관계자가 궁극적으로 요구하는 것은 숫자 자체가 아니라 그 숫자를 작성한 '맥락'입니다. 기후위기 상황에서 기업이 자사의 위험과 기회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ESG 공시 제도의 목적이며, 숫자는 그 고민의 흔적을 확인하는 수단에 지나지 않습니다. 환경 목표를 뒷받침할 맥락과 서사는 사회(인권) 영역에서 발견됩니다.

국제적 약속이나 국가 목표에 동참하기 위해 탄소중립을 달성하겠다는 선언은 수동적이며 여러 기업이 반복해 온 진부한 표현입니다. 반면 사회와 환경 영역을 함께 고려한 전략은 인권 옹호와 기후위기 대응의 측면에서 기업 외부의 비판을 견뎌낼 정당성을 확보하고, 기업이 종사하는 산업과 이해관계자의 특성에 맞춰 숙고했다는 점에서 기업 고유의 서사로 자리 잡아 내부 구성원의 공감을 얻습니다.

본 가이드라인은 기업 실무자에게 부여된 기후·환경 전략 수립 과제를 풀어내기 위해, 그동안 충분히 고려되지 못한 아동권리를 본격적으로 다루는 방안과 참고 사례를 제시합니다. 아동은 기업의 소비자이자 미래 노동력이며, 무엇보다 지금 이 순간 기업 활동의 영향을 받는 핵심 이해관계자입니다. 아동의 권리를 기후위기 대응 전략에 반영함으로써 조직은 ESG 경영 전략을 통합적으로 점검할 수 있습니다.

본 가이드라인이 제안하는 점검 방식은 네 가지 기준(A·B·C·D)으로 구성됩니다. 첫째, 거버넌스 체계를 점검하여 기업이 아동을 독립적 권리주체이자 이해관계자로 인식하는지, 그리고 이 인식이 중요성 평가에 반영되는지 검토합니다(A). 둘째, 의사결정 절차를 점검하여 그 과정에서 아동의 참여를 어떻게 보장하는지 확인합니다(B). 셋째, 인권·환경 리스크 관리 시스템을 점검하여 실사와 영향평가 과정에서 아동의 피해를 어떻게 예방하고 구제하는지 진단합니다(C). 넷째, 기업이 기후·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동시에 아동의 삶과 권리에 영향을 주고 있음을 인지하는지 자체적으로 점검합니다(D).

약어	정식 명칭	한국어 표기
CAP	Children's Advisory Panel	아동 자문 패널
CRBP	Children's Rights and Business Principles	아동권리와 경영원칙
CRIA	Child Rights Impact Assessment	아동권리영향평가
CCRI	Children's Climate Risk Index	아동 기후위험 지수
CSDDD	Corporate Sustainability Due Diligence Directive	기업 지속가능성 실사 지침
CSRD	Corporate Sustainability Reporting Directive	기업 지속가능성 보고 지침
CSR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기업의 사회적 책임
ESG	Environmental, Social, Governance	환경, 사회, 지배구조
ESRS	European Sustainability Reporting Standards	유럽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GRI	Global Reporting Initiative	글로벌 보고 이니셔티브
CRC/C/GC/26	General comment No. 26 (2023) on children's rights and the environment with a special focus on climate change	유엔아동권리위원회 일반논평 제26호
HRDD	Human Rights Due Diligence	인권 실사
ICJ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국제사법재판소
IFRS S2	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 S2 : Climate-related Disclosures	국제회계기준 기후 관련 공시
KPI	Key Performance Indicator	핵심성과지표
LCA	Life Cycle Assessment	전과정 평가
NDC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OECD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경제협력개발기구
OHCHR	Office of the United Nations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
SBTi	Science Based Targets initiative	과학 기반 감축 목표 이니셔티브
TCFD	Task Force on Climate-related Financial Disclosures	기후변화 관련 재무정보 공개협의체
UNCRC	UN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유엔아동권리협약
UNCRC	UN Committee on the Rights of the Child	유엔아동권리위원회
UNGPs	UN Guiding Principles on Business and Human Rights	유엔 기업과 인권 이행원칙

들어가며

01

1.1.

목표 및 활용법

본 가이드라인은 기업이 <ESG 기후위기 대응 아동권리 지표(이하 '아동권리 지표')>를 활용해 조직의 기후·환경 대응 및 ESG 경영 현황을 점검할 수 있도록 실무적 방향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특히 아동¹⁾을 기업의 기후위기 대응에 대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독립된 권리 주체이자 주요 이해관계자로 바라보고, 기업의 공시 및 의사결정 구조 안에 아동의 관점을 반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합니다.

또한 본 가이드라인은 자체 진단 도구이자 부서 간 협의 자료, 기존 ESG 공시 체계를 보완하는 참고 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실무자는 각 지표를 바탕으로 기업 내부의 ESG 관련 정책, 절차, 데이터, 운영 체계를 아동 권리 관점에서 검토하고, 현재 수준과 보완 지점을 점검할 수 있습니다.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하는 아동권리 지표는 기업에게 새로운 업무를 추가로 요구하기보다는 이미 기업 내부에 축적된 데이터와 정책을 아동권리 관점에서 다시 살펴보는 과정에 가깝습니다. 인사·환경·구매·공급망·ESG 등 여러 부서에 분산된 자료와 운영 체계를 연결해 보면 기존에는 드러나지 않았던 아동과 기후위기와 관련된 위험과 기회 요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기업은 자사의 사업 활동이 기후위기와 아동에 미치는 영향을 유기적으로 이해하고, 기존 제도를 더욱 포용적이고 정교하게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1.2.

문제 의식: 기업이 기후위기를 말할 때, 왜 아동은 빠져 있나요?

아동은 세계 인구의 약 30%를 차지하며²⁾ 기후위기의 핵심 피해 당사자임에도 불구하고 기업의 기후대응 의사결정 과정을 포함한 ESG 전략 전반에서 충분히 고려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동은 지금 이 순간 기업의 활동에 직접 영향을 받는 이해관계자입니다. 기업의 제품·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이자, 기업이 위치한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서 환경오염과 기후변화의 영향을 경험합니다. 또한 아동은 임직원의 가족 구성원으로서 사업장 환경, 근로 조건, 사업장의 재난 대응 체계 등의 영향을 간접적으로 받기도 합니다. 동시에 아동은 기업의 미래 노동력이자 리더이기도 합니다.³⁾

유럽연합의 기업 지속가능성 실사 지침(Corporate Sustainability Due Diligence Directive, CSDDD)은 아동권리를 포함한 기업 실사를 법적 의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규범적 요구는 기후와 환경 영역에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됩니다. 기업의 기후 및 환경 전략에서 핵심 이해관계자인 아동을 고려하지 않으면 기후변화 관련 위험과 기회를 온전히 파악할 수 없게 됩니다. 이는 기후변화 관련 재무정보 공개협의체(TCFD)·글로벌 보고

¹⁾ 본 가이드라인에서 아동은 대한민국 「아동복지법」 제3조에 따라 만 18세 미만인 사람을 의미합니다. 유엔아동권리협약의 기준(18세 미만)과 동일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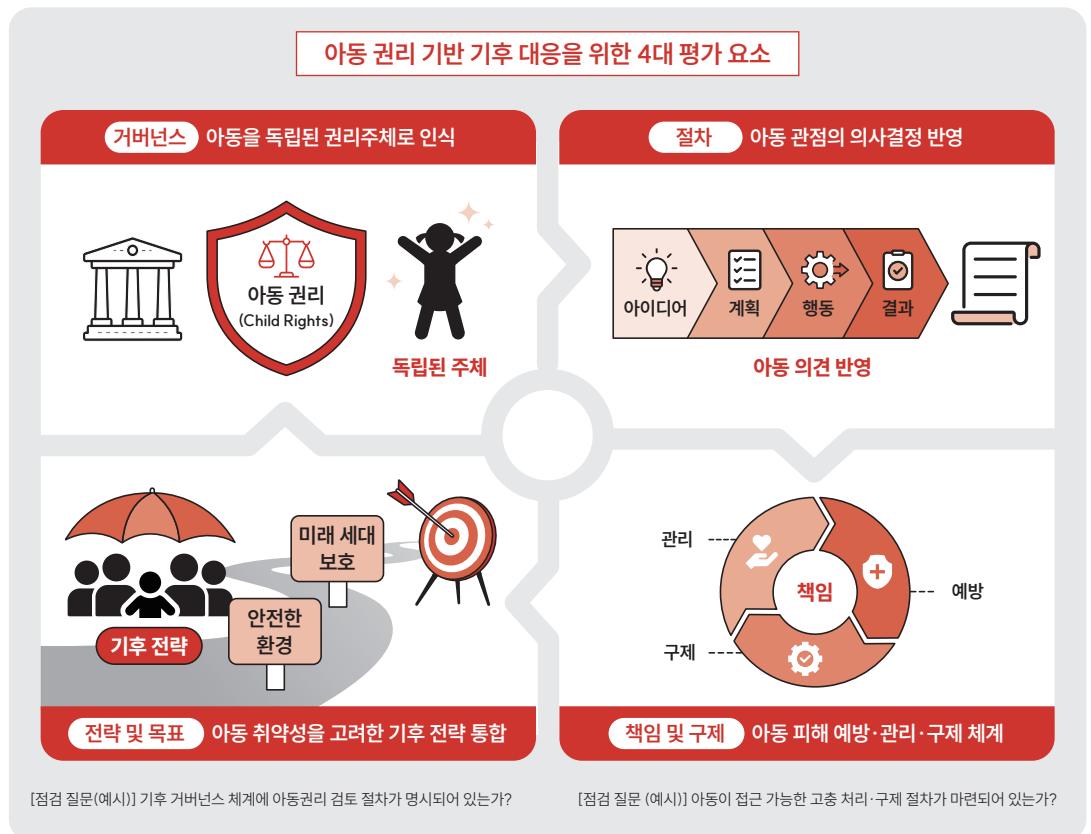
²⁾ 유니세프, '뉴노멀이 아닙니다' - 2024년, 분쟁으로 얼룩진 유니세프 역사상 최악의 시기', (2024.12.30.), <https://www.unicef.or.kr/what-we-do/news/204436>, (접속일: 2026.5.5.)

³⁾ 유니세프, "Human rights and environmental due diligence legislation Corporate accountability for children's rights", Human rights and environmental due diligence legislation | UNICEF Child Rights and Business

이니셔티브(GRI)·기업 지속가능성 보고 지침(CSRD)⁴⁾과 같은 글로벌 공시 기준이 요구하는 정보와 실제 현장 사이에 간극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실제 기업들은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연구진은 유엔아동권리협약(UN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UNCRC)과 글로벌 보고 이니셔티브(GRI) 표준을 결합하여 도출한 4가지 평가 요소인 ① 거버넌스(아동을 독립된 권리주체로 인식) ② 절차(아동 관점의 의사결정 반영) ③ 전략 및 목표(아동 취약성을 고려한 기후 전략 통합) ④ 책임 및 구제(아동 피해 예방·관리·구제 체계)를 기준으로 국내 시가총액 상위 100대 기업⁵⁾의 ESG 보고서를 분석하였습니다.

[그림 1] 아동권리 관점에서 본 기업 기후 대응의 4가지 평가 요소



100개 기업 중 절반 이상인 56개 기업이 아동 관련 내용을 명시적으로 언급하고 있었지만, 그 내용은 아동노동 금지, 인권실사 등 공급망 관리 차원에 한정되어 있었습니다. 기후와 환경 전략에서 아동을 명시적으로 언급한 기업, 즉 거버넌스·절차·전략 영역에서 아동을 기후와 환경 영향의 독립적 이해관계자로 인식한 기업은 없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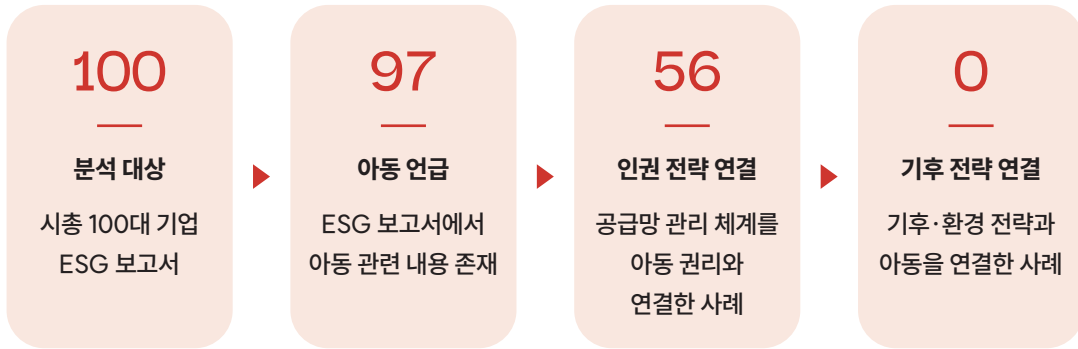
4) ① Task Force on Climate-related Financial Disclosures(TCFD)는 '기후변화 관련 재무정보 공개협의체'를 뜻한다. 기업이 자사의 기후 관련 위험을 공개하기 위한 권고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TCFD 권고안을 통해 공개된 정보는 탈탄소 전환 시에 기업이 마주하게 될 위험과 기회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합니다.

② Global Reporting Initiative(GRI)는 '글로벌 보고 이니셔티브'를 뜻하며, 기업 등이 세계에 미치는 영향을 전달하도록 지원하는 국제 비영리 단체입니다. 기업의 ESG 보고를 위한 표준화된 방법론을 제공하고 있으며, 국내 시총 100대 기업들도 GRI 표준에 맞춰 ESG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③ Corporate Sustainability Reporting Directive(CSRD)는 유럽연합이 2023년에 만든 '기업 지속가능성 보고 지침'입니다. 이 지침은 의무적으로 이행해야하는 법률입니다. 이 지침은 유럽에 사업장을 두거나 수출을 하는 유럽 외 기업에게도 영향을 미칩니다.

5) 2025년 12월 기준

[그림 2] 국내 시총 100대 기업 ESG 보고서 분석 결과: 기후위기 대응 전략과 아동 권리와의 희미한 연결성



출처: 분석 기반 녹색전환연구소 연구진 작성, 2025년 12월 기준.

국의 상황도 다르지 않습니다. 유니세프가 794개 글로벌 기업의 지속가능성 보고서를 AI로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아동의 권리를 존중하고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공시한 기업이 41%에 달합니다. 그러나 87%는 아동을 이해관계자로 식별하거나 참여시키는지 여부를 공시하지 않습니다. 동일 자료에 따르면 정책적 선언과 실제 공시 수준의 개선 사이에는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없다고 분석됩니다.⁶⁾

이러한 간극은 환경 분야에서 더욱 뚜렷하게 드러납니다. 평가 대상 기업의 96%는 환경 영향을 관리하는 과정에서 임산부와 아동이 처할 수 있는 특수한 위험을 공시하지 않았습니다. 대부분의 기업이 기후위기 대응을 포함한 환경 이슈를 중대한 사안으로 인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영향이 아동에게 '어떻게' 차별적으로 작용하는지까지는 연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즉, 국제 규범은 기업에 아동을 기후와 환경 전략의 핵심 이해관계자로 명시할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기업이 기후위기를 말할 때 아동은 여전히 논의의 바깥에 있습니다.

1.3.

ESG 보고서에 왜 아동의 이야기가 포함되어야 할까요?

ESG 보고서를 투자설명서로 보는 시각이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는 아동의 이야기나 기후위기가 아동권리에 미치는 영향을 ESG 보고서에 굳이 담을 필요가 없다는 주장이 뒤따르기도 합니다.

ESG 보고서는 기업 활동이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기업이 스스로 공개하는 문서입니다. 이를 통해 투자자뿐 아니라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은 기업이 사회와 환경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 또 어떤 위험과 기회에 직면해 있는지를 보다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또한 ESG 보고서는 기업이 지속가능성과 사회적 책임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를 이해관계자에게 설명하고, 신뢰를 쌓는 중요한 수단입니다.

아동은 그 이해관계자들 중 하나입니다. 지금 기업의 활동은 결국 아동이 살아가게 될 미래의 환경과 사회에 영향을 미칩니다. 지금 기업의 의사결정 과정에 함께 하지 못하지만, 그 결정의 결과를 가장 길게 짚어지는 것은 아동입니다. 기업의 ESG 보고서가 진정한 의미의 지속가능성 보고서가 되기 위해선 아동의 관점과 아동에 대한 영향을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⁶⁾ 유니세프, "Corporate Reporting on Children's Rights A global review of the current state of children's rights disclosures", (2025). ESRs-Corporate-Reporting-Childrens-Rights.pdf

기업의 기후위기 책임

02

기업의 기후위기 책임

2.1. 기업이 기후위기에 관심을 갖고 대응해야 하는 이유

기업이 기후위기에 대응해야 하는 이유는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⁷⁾

첫째, 규제와 소송 리스크가 커지고 있습니다. 온실가스 감축 미이행, 기후 관련 허위 정보 제공, 파리협정 목표 미준수 등을 근거로 기업을 상대로 한 기후 소송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네덜란드 법원의 셸(Shell) 사건, 프랑스의 토탈(Total) 사건, 필리핀 인권위원회의 '탄소 메이저' 청원은 기업의 기후 책임에 대한 사법적 제재 요구가 증가할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사건명	주요 내용
네덜란드 법원의 셸(Shell) 사건 ⁸⁾	2021년 헤이그 지방법원이 석유화학 및 에너지 기업인 셸에 2030년까지 온실가스 45% 감축 의무 부과 (네덜란드 민법 제6:162조에 규정된 '성문법에 규정되지 않은 주의의무(Unwritten standard of care)'에 근거) - Scope 1·2뿐 아니라 Scope 3(공급망·소비 단계)까지 포함, 기업 비즈니스 모델 변화 요구
프랑스의 토탈(Total) 사건 ⁹⁾	- NGO·지자체는 석유화학 및 에너지 기업인 토탈의 실사계획이 1.5°C 목표 및 기후 리스크 반영 부족이라며 소송 제기 2017년 제정된 프랑스 기업 실사법(Duty of Vigilance Law) 기반, 기업의 인권·환경 리스크 관리 의무 적용 촉구
필리핀 인권위원회의 '탄소 메이저' 청원 ¹⁰⁾	- 필리핀 인권위원회, 47개 글로벌 기업 대상 기후변화로 인한 인권 침해 조사 (세계 최초 사례) - 기업의 인권 존중 의무는 기후변화에도 적용됨을 주장 -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국제 기후소송·규범 형성에 큰 영향 (기업 책임 의무 강화)

7) C. Macchi, "The Climate Change Dimension of Business and Human Rights: The Gradual Consolidation of a Concept of 'Climate Due Diligence,'" Business and Human Rights Journal 6(1), (2020): 93 - 119

8) Freshfields, "Milieudéfensie v Shell: Appeal Verdict - Key Takeaways," (2024.), <https://www.freshfields.com/en/our-thinking/blogs/sustainability/milieudéfensie-v-shell-appeal-verdict-key-takeaways-102jqz6>, (접속일: 2026. 5. 5.); NOVA School of Law (NOVA BHRE), "Landmark Ruling: Milieudéfensie et al. v. Royal Dutch Shell," <https://novabhre.novalaw.unl.pt/landmark-ruling-milieudéfensie-et-al-v-royal-dutch-shell/>, (접속일: 2026. 5. 5.)

9) Sherpa, "Climate Case Against TotalEnergies: A Decisive Hearing on the Merits," (2026. 2. 18.), <https://www.asso-sherpa.org/climate-case-totalenergies-hearing-on-merits>, (접속일: 2026. 5. 5.); Inside Climate News, "Paris Court Holds Historic Climate Trial in Case Against TotalEnergies," (2026. 2. 19.), <https://insideclimatenews.org/news/19022026/paris-totalenergies-climate-trial/>, (접속일: 2026. 5. 5.)

10) White & Case, "Philippines Climate Change Report: Implications for Carbon Majors," (2023), <https://www.whitecase.com/insight-our-thinking/philippines-climate-change-report-implications-carbon-majors>, (접속일: 2026. 5. 5.); Climate Litigation Accelerator (CLX Toolkit), "The Carbon Majors Inquiry," <https://clxtoolkit.com/casebook/the-carbon-majors-inquiry/>, (접속일: 2026. 5. 5.)

둘째, ESG 공시 및 기업 실사 의무가 제도화되고 있습니다. 유럽연합을 선두로 주요 권역에서 기업의 인권·환경 실사가 규제 영역으로 들어왔습니다. 대표적으로 유럽연합의 기업 지속가능성 실사 지침(CSDDD)은 기업 실사 범위에 기후변화를 포함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는 기업은 법적·평판적·재무적 위험에 노출됩니다. ESG 공시 규범 역시 빠르게 제도화되고 있습니다. 일례로 호주는 2025년부터 기후 부문 공시를, 일본은 2027년부터 기업의 시가총액이 높은 기업부터 단계적으로 ESG 공시가 의무화됩니다.¹¹⁾ 한국도 2026년 2월 'ESG 공시제도 로드맵 의견수렴안'이 발표되었고, 2028년부터 자산10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를 대상으로 ESG 공시 의무가 적용될 예정입니다.

셋째, 기업의 사회적 '사업 운영권'이 걸려있습니다. 기후변화의 심각성과 그 영향에 관한 과학적·사회적 지식은 이미 충분히 축적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기업이 기후위기에 적절히 대응하지 않는다면 기후변화로 인한 인권 침해는 지속시키거나 악화하는 데 관여한 주체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일례로, 기후변화가 아동 건강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은 과학적으로 확인되었습니다.¹²⁾ 이러한 상황에서 기업이 합리적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직접적인 원인 제공 여부와 별개로 이미 발생한 피해를 방관했다는 책임에서 자유롭기 어렵습니다. 결국 무대응은 해당 기업의 사업 활동에 대한 사회적 반감을 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변화의 배경에는 지난 10년간 국제사회가 형성해 온 공감대가 있습니다. 기후변화의 영향을 인권 문제로 다루어야 한다는 인식이 자리잡으면서 기업의 책임도 새롭게 규정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로 인한 인권 침해에 대한 책임은 이제 국가의 보호 의무를 넘어, 유엔 기업과 인권 이행원칙(UN Guiding Principles on Business and Human Rights, UNGPs)이 명시하는 기업의 책임 영역으로까지 확장되고 있습니다.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는 기업이 인권 옹호의 관점에서 자사의 기후 영향에 책임을 지고, 기후변화 완화 및 적응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¹³⁾ 또한 기후변화와 관련된 인권 침해 식별은 기업의 인권 실사(Human Resources Due Diligence, HRDD)의 핵심 요소라고 판단합니다. 이는 기업의 기후위기 대응이 기업의 사회적 책임(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CSR)의 수준을 넘어, 규범적 의무의 영역으로 이동하고 있음을 뜻합니다.

2.2.

왜 기업의 기후위기 대응을 아동과 연결하여야 하나요?

기업이 기후위기 대응을 아동과 연결해야 하는 이유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관련됩니다. 유엔 기업과 인권 특별대표였던 존 러기(John Ruggie)는 아동이 사회에서 가장 소외되고 취약한 집단에 속하며, 기업의 활동과 사업관계로 인해 불균형적이고 심각하며 장기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¹⁴⁾

기업의 기후 대응은 규범적 정합성 측면에서도 아동권리와 연결되어야 합니다. 2012년 세이브더칠드런, 유니세프, 유엔글로벌콤팩트가 공동으로 발표한 '아동권리와 경영원칙(Children's Rights and Business Principles, CRBP)'은 기업이 아동권리를 경영 전반에 반영해야 한다는 규범 체계를 마련했습니다.¹⁵⁾ 기업이 아동권리를 사업의 핵심 고려사항으로 반영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¹⁶⁾ 2021년 유니세프가 발표한 아동 기후위험 지수(Children's Climate Risk Index, CCRI)는 당시 전 세계 약 10억 명의 아동이 극도로 높은 기후

11) 녹색전환연구소, "2024 국정감사 정책자료집: 지속가능성 공시 의무화 국내외 동향 및 진단 — 기후공시를 중심으로,"(2024), https://igt.or.kr/bbs/board.php?bo_table=m03_01&wr_id=18&page=2, (접속일: 2026. 5. 21.).

12) N. Watts et al., "The 2019 Report of The Lancet Countdown on Health and Climate Change: Ensuring That the Health of a Child Born Today Is Not Defined by a Changing Climate", "The Lancet", 394(10211), (2019): 1836-1878, [https://doi.org/10.1016/S0140-6736\(19\)32596-6](https://doi.org/10.1016/S0140-6736(19)32596-6).

13) OHCHR, 'HUMAN RIGHTS, CLIMATE CHANGE AND BUSINESS', (2020)

14) J. Kolieb, "Protecting the Most Vulnerable: Embedding Children's Rights in the Business and Human Rights Project", (2020)

15) 유니세프 et al., "Children's Rights and Business Principles," (2013.), <https://www.sc.or.kr/news/reportView.do?NO=28811>, (접속일: 2026. 5. 5.)

16) Ibid.

위험에 노출되어 있음을 보여주며, 기후위기를 아동권리 문제로 다루어야 함을 시사합니다. 이러한 국제적 기준이 확산되는 상황에서 기업이 아동을 주요 이해관계자로 포함하지 않는다면, 기업의 공시 데이터 상의 공백이 발생하고 인권 실사 의무 이행에도 한계가 생깁니다.

규범적 차원을 넘어 기업이 아동을 기후 대응의 이해관계자로 인식하는 것은 기업의 장기적 생존과도 연결됩니다. 오늘날의 아동은 미래의 소비자이자 노동자이며 시민입니다. 기후위기가 아동의 건강, 교육, 발달을 저해할 경우, 기업이 의존하는 인적·사회적 자본의 기반을 약화시킵니다. 따라서 기업이 기후위기 대응 전략에 아동권리를 포함하는 것은 기업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합리적인 선택입니다.¹⁷⁾

2.3.

기후위기의 핵심 이해관계자로서의 아동

2.3.1. 기후위기 영향을 가장 길게 살아갈, 가장 크게 감당할 당사자

발달과 생물학적 취약성

아동은 성인보다 기후변화의 건강 영향에 더 취약합니다. 이는 생물학적·발달적 특성에서 비롯된 구조적 취약성입니다. 미국소아과학회에 따르면 아동은 △고유한 행동 패턴, △발달 중인 장기와 생리적 특성, △체중 대비 더 많은 공기·음식·물 섭취로 인한 오염물질 노출 증가 등으로 인해 기후 위기와 관련한 건강 약화에 더 크게 노출됩니다.¹⁸⁾

구체적으로 아동은 높은 대사율과 빠른 호흡으로 환경 위해 요인에 더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특히 폭염, 대기오염, 홍수 등 기후위기로 인한 환경 변화에 노출될 경우, 성인보다 건강에 더 큰 피해를 겪을 수 있습니다. 뇌와 장기가 발달하는 시기에 이러한 영향을 경험하면 장기적인 건강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도 높습니다.¹⁹⁾ 또한 체온 조절 능력이 충분히 발달하지 않아 폭염에 취약하며, 야외 활동이 많아 대기오염과 알레르기 물질에 더 많이 노출됩니다. 여기에 아동은 신체와 면역 체계가 발달하는 과정에 있어 환경적 위험에 더욱 취약합니다.²⁰⁾ 이처럼 기후변화는 대기오염, 폭염, 홍수, 식량 불안정, 감염병 확산, 정신건강 문제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아동의 건강에 영향을 미칩니다.

시간적 이해관계의 비대칭성

아동은 역사적으로 온실가스 배출에 대한 책임은 작지만, 그 결과를 오래 그리고 크게 감당해야 합니다. 이러한 시간적 불균형은 아동을 기후위기 대응의 핵심 이해관계자로 봐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는 곧 세대 간 정의의 문제로 이어집니다.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하지 못한 아동 세대가 기후위기의 결과를 평생 감당해야 하는 구조가 자리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2021년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이러한 문제를 인정하며 불충분한 기후 대응이 미래 세대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²¹⁾

국제 규범 역시 이러한 비대칭을 좁히기 위한 책임 주체를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유엔아동권리협약(UNCRC) 제3조 제2항은 국가가 아동의 보호와 복지에 필요한 돌봄을 보장할 책임을 지며, 이를 위해 부모와 보호자 등 책임

¹⁷⁾ T. M. Collins, "The Relationship between Children's Rights and Business," The International Journal of Human Rights 18(6), (2014)

¹⁸⁾ G. Ahdoot et al., "Climate Change and Children's Health: Building a Healthy Future for Every Child," PEDIATRICS 153(3), (2024).

¹⁹⁾ L. Stokes et al., "From Exposure to Action: Climate Change, Children's Health, and the Role of Environmental Health Professionals," Journal of Environmental Health 88(6), (2026)

²⁰⁾ F. P. Perera, "Not Just Little Adults," (2022)

²¹⁾ E. Donger, "Children and Youth in Strategic Climate Litigation: Advancing Rights through Legal Argument and Legal Mobilization," Transnational Environmental Law 11(2), (2022)

있는 성인의 권리와 의무를 고려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²²⁾ 나아가 유엔 기업과 인권 이행원칙(UNGPs)은 기업이 법 준수를 넘어 사업 활동이 '특정한 보호와 관심이 필요한 집단(specific groups or populations that require particular attention)'에 미치는 영향을 예방·점검·개선할 책임을 진다고 명시합니다.²³⁾ 특히 아동은 환경오염, 기후위기, 노동, 광고, 디지털 환경 등 기업 활동의 영향을 크게 받는 집단인 만큼, 기업 역시 아동권리 보호의 책임 주체로 고려해야 합니다.

2.3.2. 의사결정과정에서 배제된 아동의 목소리

정치적·법적 행위능력의 제약

아동은 기후위기의 핵심 피해 당사자임에도 불구하고, 기후 관련 의사결정과정에서 구조적으로 배제되어 있습니다.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정치적 행위능력의 제약입니다. 아동은 투표권이 없기에 기후 정책을 결정하는 과정에 직접 영향을 미치기 어렵습니다. 이로 인해 국가와 기업의 기후위기 대응 과정은 정작 가장 큰 영향을 받을 세대의 이해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게 됩니다.

법적 측면에서도 유사한 제약이 존재합니다. 아동은 권리의 주체로 인정되지만, 실제로는 법정대리인을 통해서만 소송에 참여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후 소송에 참여하는 아동들은 이러한 장벽을 넘어야 하며, 많은 국가에서 아동의 절차 참여를 구체적으로 보장하는 제도는 아직 충분히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한계는 기후정책에서도 드러납니다. 2020년도 기준으로 각국의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s, NDCs) 가운데 약 42%가 아동·청소년을 언급하지만, 대부분 취약계층의 일부로 나열하거나 실질적 기후 행동과 연결하지 않아 아동 친화적이라 보기 어렵습니다.²⁴⁾ 특히 '만 18세 미만의 아동'을 직접적으로 언급한 경우는 160개국 중 20%에 불과했으며, 아동의 권리 옹호까지 강조한 국가는 단 3개국(2% 미만)에 불과했습니다.²⁵⁾

현재 의사결정 구조에서 대표되지 못하는 구조적 공백

유엔아동권리협약(UNCRC)은 아동의 참여권과 의견을 들을 권리를 핵심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후변화 관련 글로벌 의사결정에서 아동이 실질적으로 참여한 사례는 드물며, 참여가 이루어지더라도 형식적 수준에 머무는 경우가 많습니다.²⁶⁾ 아동 참여의 공백은 기업 전반의 의사결정 과정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ESG 공시나 기후 전략 수립 과정에서도 아동을 주요 이해관계자로 포함하는 사례는 업종 특성에 따라 극히 드물게 등장합니다.

공식 채널에서 배제된 아동들은 기후 소송, 거리 시위, 온라인 캠페인 등 비공식적 방식으로 참여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는 기존 의사결정 구조가 아동의 이해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따라서 기업이 기후 전략에 아동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것은 이러한 공백을 보완하는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2.3.3. 국제 규범이 논하는 아동권리

아동권리와 기후위기를 연결하는 국제 규범의 확산

²²⁾ United Nations, "UN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1989), <https://www.unicef.org.uk/what-we-do/un-convention-child-rights/>, (접속일: 2026. 5. 27.).

²³⁾ United Nations Human Rights Office of the High Commissioner, Guiding Principles on Business and Human Rights: Implementing the United Nations "Protect, Respect and Remedy" Framework, (2011)

²⁴⁾ 유니세프 연구에 따르면, 전체 NDCs는 당시 UNFCCC NDC 등록부에 등재된 자료를 기준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작성 시점 기준 등록부에는 184개의 NDCs가 존재했으나, 실제 분석에는 총 160개의 NDCs가 활용되었습니다. (출처: Joni Pegram and Cristina Colon, "Are Climate Change Policies Child-Sensitive?," UNICEF Office of Global Insight and Policy, (2019).)

²⁵⁾ Ibid.

²⁶⁾ Z. Vaghri, "Climate Change, An Unwelcome Legacy: The Need to Support Children's Rights to Participate in Global Conversations," Children Youth and Environments 28(1), (2018)

아동권리와 기후위기의 연결은 국제 규범 차원에서 점진적으로 구체화되어 왔습니다. 그 기반은 유엔아동권리협약(UNCRC)입니다. 이 협약은 아동의 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 등을 보호할 국가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전 세계에서 가장 널리 비준된 아동 인권 조약입니다. 기후위기는 이러한 권리를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요인으로 부상하고 있으며,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기후변화를 아동 건강에 대한 주요 위협으로 규정했습니다.

2015년 파리협정은 기후행동 과정에서 아동을 포함한 인권 고려의 필요성을 처음으로 공식화한 계기입니다. 이를 기점으로 기후와 아동권리를 연결하는 논의가 본격화되었습니다.

이 흐름은 2023년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일반논평 제26호(CRC/C/GC/26)에서 구체화되었습니다. 해당 논평은 기후변화를 아동의 생존과 발달을 위협하는 구조적 문제로 규정하고, 국가가 청정하고 건강하며 지속가능한 환경을 보장할 의무가 있음을 명확히 합니다. 또한 아동이 스스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절차적 경로를 마련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2025년 국제사법재판소는 '기후변화 관련 국가의무에 대한 권고적 의견'을 발표하며 2015년 파리협정과 같은 기후변화 조약상의 의무²⁷⁾가 법적 구속력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국제사법재판소는 세대 간 형평성(Intergenerational equity) 원칙 역시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현재 세대의 선택과 행동이 미래 세대에 과도한 부담을 남기지 않도록 장기적 영향을 함께 검토해야 함을 언급했습니다.²⁸⁾

이러한 규범의 발전은 기후 소송 사례에서도 확인됩니다. 여러 국가에서 아동과 그 대리인이 제기한 소송을 통해, 국가는 예측 가능한 기후 피해로부터 아동을 보호할 법적 의무를 진다는 해석이 강화되는 추세입니다.²⁹⁾

기업 ESG 경영과 인권실사 차원에서 아동을 명시하는 흐름

기업의 ESG 경영과 인권실사 차원에서 아동을 고려해야 한다는 흐름이 규범적으로 확대되어왔습니다. 2011년 채택된 유엔 기업과 인권 이행원칙(UNGPs)은 아동과 같은 취약 집단에 대해 기업이 강화된 실사를 수행해야 한다고 규정했습니다. 유엔 기업과 인권 이행원칙(UNGPs)에 기반한 경제협력개발기구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과 유럽연합의 기업 지속가능성 실사 지침(CSDDD)도 공급망 전반에서 아동에 대한 인권 영향을 평가하고 대응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아동권리영향평가(Child Rights Impact Assessment, CRIA)가 기업 활동이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는 방법론으로 채택되고 있습니다. 해당 평가는 기업이 기후와 환경과 관련된 영향평가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아동에 대한 영향을 사전에 확인하고, 잠재적 위험과 취약성을 점검하는 도구로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 3.3.1.3. 함께 보면 좋을 자료)

다만 현재 기업 전반의 대응은 이미 마련된 아동권리 규범이나 평가 방법론에 비해 부족한 수준입니다. 많은 기업이 아동권리를 일반적인 인권 선언 수준에서만 다루거나, 공급망 계약이나 일부 사회공헌 활동에 한정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기업이 인권 존중을 선언하는 데 그쳐서는 충분하지 않으며, 아동권리영향평가(CRIA)와 같은 구체적인 절차가 뒷받침되지 않을 경우 그 약속은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습니다.³⁰⁾ 기업이 기후 전략과 ESG 공시에서 아동을 주요 이해관계자로 포함하는 것은 이러한 규범과 현실 간의 간극을 줄이기 위한 출발점입니다.

27) 원문 발췌 "climate change is a common concern of humankind, Parties should, when taking action to address climate change, respect, promote and consider their respective obligations on . . . intergenerational equity".

(번역: "기후변화는 인류 공동의 관심사이며, 당사국은 기후변화 대응 조치를 취함에 있어 ... 세대 간 형평성과 관련한 각자의 의무를 존중·촉진·고려해야 한다.")

28)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Obligations of States in Respect of Climate Change: Advisory Opinion", (2025. 7. 23.), <https://www.icj-cij.org/case/187>. (접속일: 2026. 5. 15.)

29) E. Donger, "Children and Youth in Strategic Climate Litigation: Advancing Rights through Legal Argument and Legal Mobilization," Transnational Environmental Law 11(2), (2022)

30) T. M. Collins and G. Guevara, "Some Considerations for Child Rights Impact Assessment (CRIAs) of Business," (2023)

기업의 기후대응, 아동의 눈으로 다시 보기

03

기업의 기후대응, 아동의 눈으로 다시 보기

이 장에서는 앞서 확인한 기업의 기후위기 책임과 아동의 핵심 이해관계자로서의 지위를 실제 기업 경영에 연결하기 위한 평가 지표를 제시합니다. 기후와 환경 전략에서 아동을 독립적 이해관계자로 인식한 기업이 거의 없다는 선행 분석 결과를 출발점으로 삼고, 개선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아동권리 기반 평가 지표를 개발하였습니다. 앞서 국내 시가총액 상위 100대 기업의 ESG 보고서를 분석한 두 가지 국제 기준을 지표 설계의 준거로 삼았습니다.

유엔아동권리협약(UNCRC)은 아동을 독립적 권리 주체로 규정합니다. 차별금지, 최선의 이익 고려, 의견 존중, 피해 예방과 회복이 모든 사회적 의사결정의 원칙으로 적용됩니다. 글로벌 보고 이니셔티브(GRI)는 기업 공시가 단순한 활동 나열에 그쳐서는 안 된다고 강조합니다. 이해관계자 식별을 출발점으로, '영향 식별 > 중요성 평가 > 대응 전략 수립 > 예방·완화·구제'에 이르는 실사 프로세스 전체를 반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기준이 공유하는 문제의식은 '누가 영향을 받는가'와 '그 영향을 어떻게 식별하고 관리하는가'입니다. 본 가이드라인은 이 문제의식을 아동권리 맥락에 적용하여, 기업 ESG, 특히 기후 공시의 아동권리 이행 수준을 평가하는 최소 조건으로 네 가지 요소를 설정하였습니다.

지표는 거버넌스(A)·절차(B)·책임과 구제(C)·전략과 목표(D)의 네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기업이 아동을 기후와 환경 전략의 독립적 권리 주체로 인정하고 있는지(A), 의사결정 과정에 아동 또는 아동의 대리인 참여를 보장하고 있는지 (B), 아동의 피해를 예방하고 구제하는 체계를 갖추고 있는지(C) 를 확인합니다. 또한 아동의 연령별, 집단별 취약성을 측정 가능한 목표와 핵심성과지표(KPI)로 반영하고 있는지(D)를 단계적으로 점검합니다.

[그림 3] ESG 기후위기 대응 아동권리 지표 구성

A. 거버넌스 권리 주체 인식 A1. 이해관계자 인정 A2. 중대성 평가 반영	B. 절차 의사결정 참여 B1. 참여 구조 운영 정기적·구조적	C. 책임과 구제 피해 예방·구제 C1. 영향평가·실사 C2. 고충처리·교육	D. 전략·목표 취약성 내재화 목표·KPI 설정 도전 지표
아동을 권리 주체로 인식하는가 - 이해관계자 명시 - 전과정평가 반영 - 아동권리 전반 포함(노동 외) - UNCRC·CRBP 정책 반영 - 이사회 감독 - 중대성 평가 시 아동 영향 검토 - 기후 이슈와 아동권리 연계	아동의 목소리를 어떻게 듣는가 - 참여 구조 구축 (인터뷰·간담회·설문·자문위) - 아동 친화 언어 정보 제공 (요약본·영상·FAQ 등) - 정기적·구조적 운영 - 의견 반영 경로 명시	피해를 어떻게 예방·구제하는가 - 아동권리 영향평가(CRIA) - 참여형 실사 - 학교·병원과의 근접성 식별·완화 조치 - 아동 접근 가능 고충처리 창구 - 임직원·이사회 정기 교육	취약성을 어떻게 내재화하는가 - 기후·환경 영향 분석 - 가치사슬 전반 영향 식별 - 산업 특화 KPI 설정 - 연령 집단별 영향 차이 분석 - 교차 취약성 고려

A·B·C는 기업이 충족해야 할 기본 지표로, 하위 기준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하면 해당 지표를 이행한 것으로 판정하며, D는 기후·환경 전략 전반에 아동 취약성이 구조적으로 내재화되어 있는지를 서술식으로 확인하는 도전 지표입니다. 지표를 바탕으로 현재 기업의 현황을 평가할 때, 항목의 '해당 여부'란에 Yes/No를 표시합니다.

3.1.

A: 거버넌스 (기업은 아동을 권리의 주체로 인식하나요?)

거버넌스 영역은 기업이 기후와 환경 전략을 마련하는 출발점에서 아동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묻습니다. 아동을 단순한 보호 대상이나 사회공헌의 수혜자로 보는 것과 기업 활동의 영향을 받는 독립적인 권리 주체이자 핵심 이해관계자로 보는 것은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A 지표는 기업이 아동을 보호 대상이 아닌 독립적 권리주체이자 주요 이해관계자로 공식 인정하고, 이사회·경영진 차원에서 아동권리 이슈를 감독하고 있는지(A1), 나아가 기업이 기후 관련 위험·기회를 파악할 때 아동권리를 별도로 고려하고, 중요성 평가 결과에 아동권리 주체를 명시적으로 식별하고 있는지(A2)를 점검합니다. 이를 통해 기업의 아동권리 대응이 선언에 머무르는지, 경영 의사결정의 구조 안에 실질적으로 자리잡고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3.1.1. A1. 정책 거버넌스에 아동권리 명시

A1 기준에서는 기업이 아동을 보호 대상이 아닌 독립적 권리주체이자 주요 이해관계자로 공식 인정하고, 이사회·경영진 차원에서 아동권리 이슈를 감독하고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3.1.1.1. 평가 기준

아래 하위 기준(A1.1~A1.5)을 바탕으로 기업의 현황을 점검하여 해당 여부를 확인합니다.

하위 기준	점검 내용	해당 여부
A1.1	아동을 기업의 주요 이해관계자로 명시(또는 선언)하고 있는가 ※세부 기준(택1 이상 충족 시 'Y'): - 이해관계자 정의·목록에 아동을 별도 항목으로 기재 - 지속가능경영보고서나 관련 정책 등에서 아동을 단독으로 명시 - 아동을 포함한 이해관계자 식별 절차 또는 근거 문서 보유	Y / N
A1.2	제품·서비스의 기획·생산·유통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정적인 기후·환경 영향(온실가스 배출 등)이 아동의 건강·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정책에 반영하고 있는가 ※세부 기준(택1 이상 충족 시 'Y'): - 제품·서비스의 전과정 평가(Life Cycle Assessment, LCA) 시 아동 건강·안전 영향을 별도 항목으로 고려 - 기후·환경 영향 평가 절차에 영향받는 아동 권리 분석 포함 - 온실가스 감축 정책 수립 시 아동 건강 영향(대기오염·폭염·감염병 등)을 근거로 반영	Y / N
A1.3	기업의 ESG 전략 및 정책은 아동노동 금지에 한정되지 않고 생존·보호·발달·참여권 등 아동권리 전반을 포함하는가	Y / N
A1.4	유엔아동권리협약(UNCRC) 또는 아동권리와 경영원칙(CRBP)을 정책에 반영하고 있는가	Y / N
A1.5	아동권리 이슈가 이사회·경영진 차원에서 공유·논의되고 ESG 감독 범위에 포함되는가	Y / N

3.1.1.2. 왜 중요한가요?

기업이 아동을 단순한 보호 대상이 아닌 독립적인 권리 주체로 인정하는 것은 아동권리 보장의 출발점입니다. 기업의 거버넌스 차원에서 아동을 명시적으로 하나의 이해관계자로 인정하지 않는다면, 중요성 평가, 리스크 식별, 이해관계자 참여 구조 어디에서도 아동이 체계적으로 고려되기 어렵습니다. 유럽연합의 기업 지속가능성 실사 지침(CSDDD)은 아동권리 리스크 식별과 시정을 기업의 의무로 규정하고 있어, 거버넌스 차원에서 아동을 명시적으로 인정하지 않는 기업은 이 의무 이행에 구조적 한계를 갖게 됩니다.

또한 이사회와 경영진의 감독 범위에 아동권리가 포함되어야 전사적 차원의 대응이 이루어지고, 국제 기준에 근거한 정책은 기업의 책임성과 신뢰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3.1.1.3. 함께 보면 좋을 자료

공급망 행동강령에 UN 아동권리협약 제3조(아동 최선의 이익)를 명문화한 IKEA

주요 관련 지표 A1.1.



IKEA는 2000년 공급망 행동강령 IWAY를 도입한 이후 아동노동 금지를 핵심 의무 요건으로 운영해 왔음. 2026년 1월 개정된 IKEA의 행동강령(Our Code of Conduct)에서는 아동·강제·담보 노동에 대한 무관용 원칙과 함께, "아동의 권리를 존중하고, 직·간접적 관여에서 아동의 최선의 이익에 따라 행동한다"는 문구를 명시함. 이 행동강령은 Inter IKEA Group 전체 임직원과 협력업체·계약자에게 적용되며, 별도의 공급업체용 강령(IWAY)과 프랜차이즈용 강령(ICoConduct)에도 동일하게 적용됨.

분석 I IKEA는 아동권리 규범에 기반하여 회사의 규정을 정립함. 특히 '아동의 최선의 이익'이라는 유엔아동권리협약(UNCRC) 제3조의 핵심 원칙을 기업 규범에 직접 차용함. 또한 IKEA는 자사 임직원

행동강령, 공급업체 강령(IWAY), 프랜차이즈 강령(ICoConduct)이라는 세 층위의 규범 체계를 운영하면서, 아동권리 원칙을 모든 층위에 일관되게 반영함. 이는 아동권리 관련 정책이 특정 부서의 선언에 머물지 않고, 조직 전체의 행동 기준으로 기능하도록 한 설계임.

출처: Inter IKEA Group, Our Code of Conduct, (2026.1.); IKEA Global, IWAY 공식 페이지

유엔아동권리협약(UNCRC)을 기반으로 자사의 인권정책을 마련한 Vodafone

주요 관련 지표

A1.4.



유럽 다국적 통신기업 Vodafone은 자사 인권 정책을 'Human Rights (including Child Rights) Policy'로 명명하여 아동권리가 인권정책의 핵심 내용임을 강조함. 또한 이 정책은 유엔아동권리협약(UNCRC)과 '아동의 디지털 권리 존중(children's rights in relation to the digital environment)'에 기반함을 밝히고 있음.

참고로, Vodafone은 아동권리와 기업의 이행 수준을 평가하는 글로벌 벤치마크인 'The State of Children's Rights & Business Benchmark Report 2025³¹⁾'에서 텔레커뮤니케이션 부문 상위 10위권 내에 포함되었으며, 전체 8개 부문·33개 산업에 걸쳐 평가된 약 1,800개 기업 중에서도 상위 30위권에 오른 우수 기업으로 평가받았음.

분석 I Vodafone은 유엔아동권리협약(UNCRC)을 자사 인권정책의 근거 규범으로 채택함으로써, 아동권리가 기업의 자발적 선언이 아닌 국제법적 근거를 가진 의무임을 선언함. 또한 정책 명칭 자체에 'including Child Rights'라는 문구를 포함시킨 것은 아동권리가 별도의 주의를 요하는 핵심 영역임을 조직 내부에 전달하는 전략적 설계로 판단됨.

출처: Vodafone, 'Child Rights and Online Safety', <https://www.vodafone.com/sustainable-business/maintaining-trust/society/human-rights/child-rights-and-online-safety>, (접속일: 2026.4.24.); Vodafone, Human Rights: Our Impacts; Global Child Forum, Global Benchmark Report 2025: The State of Children's Rights & Business.

³¹⁾ The State of Children's Rights & Business Benchmark는 글로벌 차일드 포럼에서 개발한 지표로서, 기업의 운영 및 가치사슬 전반에서 아동권리를 얼마나 존중하고 보호·지원하고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글로벌 지표입니다. 2024년부터 기관의 홈페이지에서 약 1,000여개의 기업들을 평가한 순위표가 공개되고 있습니다.

3.1.2. A2. 중요성 평가에서 아동권리를 별도 이슈로 식별

A2 기준에서는 기업이 기후 관련 위험·기회를 파악할 때 아동권리를 별도로 고려하고, 중요성 평가 결과에 아동권리 주제가 명시적으로 식별되어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3.1.2.1. 평가 기준

아래 하위 기준(A2.1~A2.2)을 바탕으로 기업의 현황을 점검하여 해당 여부를 확인합니다.

하위 기준	점검 내용	해당 여부
A2.1	중요성 평가(또는 기후 리스크 식별·평가) 절차에서 기업의 환경 영향이 아동의 건강·안전·교육 등에 미치는 영향을 별도로 검토하고 있는가	Y / N
A2.2	중요성 평가 결과 '기후위기 대응'이 기업의 중대 이슈로 도출된 경우, 해당 이슈가 아동 권리에 미치는 영향이 함께 명시되어 있는가 세부 기준(택1 이상 충족 시 'Y'): - 중요성 평가 결과 공식 자료(ESG 보고서·웹사이트 등)에서 기후 관련 중요 이슈가 아동 권리에 미치는 영향을 함께 서술 - ESG 보고서의 환경(E) 부문에 아동 권리 영향이 별도 단락·항목으로 서술	Y / N

3.1.2.2. 왜 중요한가요?

기후위기의 물리적·전환 리스크는 모든 이해관계자에게 동일하게 작용하지 않으며, 특히 아동에게는 더욱 치명적이고 장기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중요성 평가에서 아동권리를 별도 이슈로 식별하는 것은 기업이 아동을 핵심 이해관계자로 인식하고 있음을 공식화하는 절차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 기후 리스크 관리와 전략 수립에 아동의 관점이 체계적으로 반영됩니다.

3.1.2.3. 함께 보면 좋을 자료

기업은 아동 건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까요? - 천식

주요 관련 지표
A2



기업의 사업 활동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과 대기오염물질은 기후변화를 가속화하는 주요 요인 중 하나이며, 이로 인한 기온 상승, 미세먼지, 오존(O₃) 농도 증가, 꽃가루 및 곰팡이 확산 등은 천식의 발병과 악화에 직접 기여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음.³²⁾

³²⁾ A. M. Fiore et al., "Air Quality and Climate Connections," 「Journal of the Air & Waste Management Association」65(6), (2015): 645 – 685, <https://doi.org/10.1080/10962247.2015.1040526>; T. K. Phakisi et al., "The Interlinkages Between Ambient Temperature and Air Pollution in Exacerbating Childhood Asthma: A Time Series Study in Cape Town, South Africa," 「Children」12, (2025): 1634, <https://doi.org/10.3390/children12121634>.

미국 환경보호청(EPA)은 지구 평균 기온이 2°C 상승할 경우 천식 환자가 약 4%, 4°C 상승 시 약 11%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이를 적용하면 2026년 기준으로 약 3억 3,900만 명 수준인 전 세계 천식 환자 수가 최대 약 3억 8천만 명 수준까지 증가할 가능성이 있음.

이 과정에서 가장 큰 영향을 받는 집단이 아동임. 아동은 체중 대비 호흡량이 많고 폐 기능이 발달 중이어서 오염물질과 알레르기 유발 물질(Allergen)에 성인보다 민감하게 반응함. 기후변화로 인한 일교차 확대는 기관지를 자극해 천식 발작 위험을 높이며, 관련 연구에 따르면 일교차가 1°C 증가할 때 아동 천식 위험이 65.9% 증가하는 것으로 보고된 바 있음.

기업의 환경 영향은 온실가스 배출에서 시작하여 아동 천식 증가로 이어지는 구조적 경로를 형성함. 따라서 기업은 환경·기후 영향을 평가할 때, 대기오염물질과 온실가스 배출이 아동의 호흡기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별도의 항목으로 구분해 식별하고 검토할 필요가 있음.

분석 | 환경 리스크가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은 성인과 질적으로 다름. 아동은 체중 대비 호흡량·물 섭취량이 많고 신체 발달이 진행 중이므로, 동일한 노출에도 장기적·누적적 피해가 큼. 유엔아동권리협약(UNCRC)에 따라 아동 권리 증진을 도모하는 비영리 재단인 글로벌 차일드 포럼(Global Child Forum)은 이러한 차별적 취약성을 근거로, 기업의 환경 영향 평가 시 아동을 별도 집단으로 식별할 것을 권고함(아래 벤치마크 사례 참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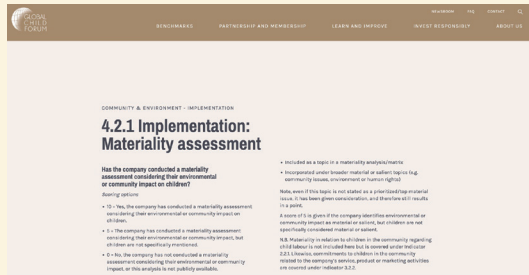
참고 | 글로벌 차일드 포럼은 기업 활동이 아동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로 ① 유해 식품 마케팅, ② 환경오염(대기·수질·유해물질 배출), ③ 아동 노동, ④ 안전하지 않은 제품, ⑤ 가족 친화 정책 미흡 등 다섯 가지를 제시한 바 있으며, 그중 환경 영역에서는 유해 화학물질·오염물질 배출이 아동의 호흡기 질환·발달 장애를 유발할 수 있음을 지적함.

출처: 글로벌 차일드 포럼, 'Five Ways that Businesses Impact Children's Health', (2023.4.), <https://globalchildforum.org/blog/five-ways-that-businesses-impact-childrens-health/>, (접속일: 2026.5.5.); 시사위크, '기후변화, 아이들의 기침이 멈추지 않는다', <https://www.sisaweek.com/news/articleView.html?idxno=234793>, (접속일: 2026.5.5.)

아동에 대한 환경적 영향을 고려한 중요성 평가를 했나요? - 글로벌 차일드 포럼의 벤치마크 지표

주요 관련 지표

A2.2.



글로벌 차일드 포럼은 매년 전 세계 주요 기업들을 대상으로 '아동 권리와 비즈니스(The State of Children's Rights and Business)' 벤치마크를 발표하고 있음. 이 평가는 기업이 아동 권리를 지배구조, 사업장, 시장, 그리고 지역사회 및 환경이라는 네 가지 핵심 영역에서 어떻게 통합하고 실천하고 있는지를 25개 지표를 통해

분석함. 2026년 평가에는 전 세계 8개 산업, 6개 지역에서 총 1,806개 기업이 포함되었음.

분석 I 해당 벤치마크의 '지역사회 및 환경(Community & Environment)' 영역 중 이행(Implementation) 지표 4.2.1은 "기업이 아동에 대한 환경적 영향 또는 지역사회 영향을 고려한 중요성 평가를 수행했는가"를 묻고 있음. 점수 체계는 세 단계로 구성됨. 아동에 대한 환경·지역사회 영향을 고려한 중요성 평가를 수행한 경우 10점, 환경·지역사회 영향은 고려했으나 아동이 구체적으로 언급되지 않은 경우 5점, 해당 평가를 수행하지 않았거나 공개적으로 확인되지 않는 경우 0점을 부여함.

한국을 포함한 주요국 기업들이 해당 평가에 참여하고 있다는 점³³⁾은, 아동권리 고려가 일부 선도 기업의 자발적 실천을 넘어 평가 프레임워크 형태로 체계화되고 있음을 보여줌.

출처: 글로벌 차일드 포럼, 'The State of Children's Rights and Business Benchmark 2026', <https://globalchildforum.org/benchmarks/methodology/indicator-4-2-1-materiality-assessment/>, (접속일: 2026.5.5.)

³³⁾ 한국에서도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포스코홀딩스, SK하이닉스, LG전자 등 글로벌 영향력이 큰 대표 기업과 함께 금융(KB금융지주, 하나금융지주), 에너지·유틸리티(한국전력공사, SK이노베이션), 건설·중공업(현대건설, 대우건설, 한화오션), 유통·식품(이마트, CJ제일제당, 롯데쇼핑) 등 다양한 산업군의 주요 기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지표 A - 아동권리 관점 매핑표]

출처	조항 번호	조항 내용	아동권리와의 연관성
국제규범 - 아동권리 규범적 근거			
유엔아동 권리협약 (UNCRC)	제3조	아동 최선의 이익	기업 의사결정의 모든 영역에서 아동 최선의 이익을 고려할 필요성 제시. 거버넌스 차원에서 아동을 핵심 이해관계자로 명시할 규범적 근거가 됨.
	제6조	생존·발달권	기후위기·환경오염은 아동의 생존과 발달에 직접 영향을 미치므로, 기업 정책에 아동 권리 보장 책임을 통합할 근거가 됨.
	제12조	의견 표명권	아동 본인이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 대해 의견을 표명할 권리. 이해관계자 관여(ESRS SBM-2) 및 중요성 평가(ESRS IRO-1, GRI 3-1) 단계에서 아동 의견 수렴의 규범적 근거임.
	제17조	정보 접근권	아동이 자신의 권리·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에 접근할 권리. 기업의 공시·소통 정책 설계 시 아동 친화적 형식 고려의 근거임.
아동권리와 경영원칙 (CRBP)	-	아동권리 존중 및 지지 책임	아동을 소비자·노동자 가족·미래 노동자·지역사회 구성원으로 명시하며, 기업의 정책·이사회 감독 범위에 아동을 별도 권리주체로 포함할 것을 요구함.
공시기준 - 보고·평가 프레임워크			
글로벌 보고 이니셔티브 (GRI)	2-6	활동, 가치사슬 그리고 기타 비즈니스 관계	가치사슬 전반의 활동 범위를 공시하는 조항. 아동에 대한 영향이 발생하는 가치사슬 단계(원료 채굴, 공급망 노동, 소비자 접점 등)를 식별하는 출발점임.
	2-23	책임 있는 비즈니스 활동을 위한 정책적 약속	인권 정책 약속 공시 요구. 아동권리를 별도 정책 약속으로 명시하지 않으면 거버넌스 차원의 인식 부재로 해석 가능. 유엔아동권리협약(UNCRC)·아동권리와 경영원칙(CRBP)을 정책 기반으로 인용하는지 확인할 수 있음.
	2-24	책임 있는 비즈니스 활동을 위한 정책적 약속 통합 및 이행 방법	정책 약속을 운영·의사결정에 어떻게 내재화했는지 공시 요구함. 아동권리 약속이 형식적 선언에 그치지 않고 거버넌스 구조에 통합되었는지 평가함.
	2-29	이해관계자 참여에 대한 접근방식	아동을 이해관계자로 식별하고 있는지와 아동이 어떻게 관여하고 있는지에 대한 방식을 공시하도록 요구함.
	3-1	중요 이슈를 결정하는 프로세스	중요성 평가 과정에 있어 아동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제도가 존재하는지 확인 요구함.

글로벌 보고 이니셔티브 (GRI)	3-3	중요 이슈 관리	식별된 중대 이슈의 관리 방식 공시. 아동권리 관련 내용이 중대 이슈로 도출된 경우 거버넌스·정책 단위에서 관리되는지 평가함.
유럽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ESRS) ³⁴⁾	GOV-1	최고의사결정기구의 구성 현황, 영향·위험·기회 요인을 관리·감독하는 책임과 역할	이사회 등 최고 의사결정기구의 지속가능성 감독 역할 공시. 아동을 영향받는 집단으로 명시하지 않으면 거버넌스 차원의 인식 결여로 해석할 수 있음.
	GOV-2	최고의사결정기구가 보고·심의·의결한 지속가능성 영향·위험·기회 요인	ESG 관련 영향·위험·기회 정보가 이사회에 어떻게 보고·처리되는지 공시. 아동 관련 영향 또는 기회가 보고 체계에 포함되는지를 확인하는 근거로서 작용.
	SBM-2	조직의 사업운영 관련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반영하는 절차와 방식	이해관계자 관여 방식과 그 결과의 전략 반영 공시. 유니세프의 ESRS 가이드는 장애·이주민 아동 등 모든 아동의 명시적 식별 및 대리인(보호자·교사) 의견 수렴을 권고함.
	IRO-1	지속가능성 이슈의 영향·위험·기회를 식별 및 평가하는 프로세스	이중중요성 평가 프로세스 공시. 아동에 대한 영향이 별도의 평가 과정에서 다루지는지 확인하기 위한 근거 조항이라 할 수 있음.
	G1-1	최고의사결정기구의 윤리경영 선언, 관리·감독에 관한 책임과 역할; 윤리헌장 및 실천규범 등의 요구사항	윤리경영·반부패·내부고발 등 비즈니스 행동 정책 공시. 아동 대상 마케팅 윤리, 공급망 아동노동 방지 등 아동 권리 보호 관련 규범을 정책 차원에서 다루는지 평가함.
국제회계 기준 기후 관련 공시 (IFRS S2) ³⁵⁾	거버넌스	기후 관련 위험 및 기회를 모니터링, 관리 및 감독하기 위해 사용하는 거버넌스 프로세스, 통제 및 절차	기후 관련 위험 및 기회를 감독할 책임이 있는 의사결정기구(이사회) 또는 개인(경영진) 공개. 기후위기가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이 기업 거버넌스 차원에서 인식되거나 감독되고 있는지 확인함.

3.2.

B: 절차 (기업은 어떻게 아동의 의사결정 참여를 보장하나요?)

절차 영역은 기업이 아동을 정책 문서에 명시하는 것을 넘어, 실제 의사결정 과정에서 아동의 목소리를 어떻게 반영하고 있는지를 묻습니다. 유엔아동권리협약(UNCRC) 제12조는 아동에게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사안에 대해 의견을 표명할 권리를 보장하며, 이는 기업의 기후·환경 전략 수립 과정에서도 예외가 아닙니다.

아동은 학업 등으로 기업의 기후대응전략 논의과정에 참여하거나, 성인 대상으로 작성된 기업이 발간한 지속가능경영 보고서를 이해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보호자·학교·시민단체 등 대리인을 통한 참여 경로를 구조적으로 보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B 지표는 기업이 기후·환경 전략 수립과 중요성 평가

³⁴⁾ ESRS는 '유럽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을 뜻합니다. 기업이 환경·사회·지배구조(ESG) 정보를 보고할 때 따라야 하는 공시 기준으로 유럽의 법률인 기업 지속가능성 보고 지침(CSRD)을 실행가능한 형태로 구체화한 것입니다. GRI 표준과 마찬가지로 전세계적으로 통용되는 기준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³⁵⁾ IFRS S2는 '국제회계기준 기후 관련 공시'를 뜻합니다. 2022년 국제회계기준(IFRS) 재단이 설립한 ESG 공시 국제 표준 제정 기구인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SSB)에서 만든 공시 기준입니다. 크게 4개 영역(전략과 거버넌스, 위험관리, 지표 및 목표)으로 구성되어있으며, 한국 정부의 ESG 공시 기준 초안도 이에 준하여 제작된 바 있습니다.

과정에 아동 또는 대리인이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고 있는지, 그리고 그 참여가 일회성 행사에 그치지 않고 정기적인 피드백 체계로 작동하고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3.2.1. B1. 이해관계자 참여 구조에 아동(또는 대리인) 포함

B1 기준에서는 기업이 기후·환경 전략 수립과 중요성 평가에 아동 또는 대리인이 참여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고, 참여가 정기적·구조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3.2.1.1. 평가 기준

아래 하위 기준(B1.1~B1.3)을 바탕으로 기업의 현황을 점검하여 해당 여부를 확인합니다.

하위 기준	점검 내용	해당 여부
B1.1	기후·환경 전략 수립·중요성 평가에 아동 또는 대리인(보호자·학교·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구조를 갖추고, 참여 방식(인터뷰·간담회·설문·워크숍·자문위원회 등)을 구체적으로 공개하는가	Y / N
B1.2	기후위기 대응 전략·리스크·목표를 아동이 이해 가능한 언어·형식(요약본·영상·FAQ 등)으로 별도 제공하고, 아동·보호자가 실제로 접근·이용 가능한 방식인가	Y / N
B1.3	아동 관련 이해관계자 참여가 일회성이 아닌 정기적·구조적 프로세스로 운영되고, 수립된 의견이 우선순위·정책 목표 수립에 반영된 경로를 설명하는가	Y / N

3.2.1.2. 왜 중요한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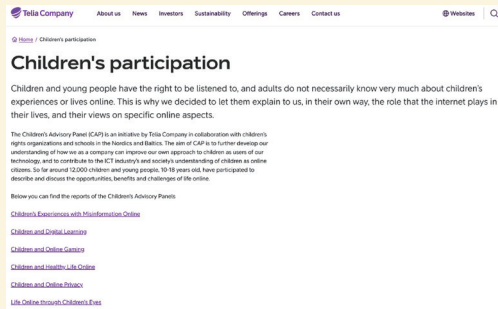
B1 지표가 이해관계자 참여 구조를 요구하는 이유는 아동이 처한 구조적 배제에 있습니다. 아동은 기후위기의 핵심 피해 당사자임에도 투표권 부재, 법적 행위능력 제약 등으로 인해 기업의 기후 전략 수립 과정에서 체계적으로 소외되어 왔습니다.

아동 또는 대리인의 참여가 구조적으로 보장되면 비로소 기업은 기후 전략에서 아동의 고유한 필요와 취약성을 반영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참여가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정기적으로 운영되어야 기업에게 주요한 이슈를 식별하는 과정과 정책 및 목표를 수립하는 과정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아동을 핵심 이해관계자로서 기업의 사업 활동에 참여시킨 Telia

주요 관련 지표

B1.1.



2015년, 북유럽 통신기업 Telia Company는 자사의 중요성 평가 과정에서 아동의 온라인 안전과 디지털 환경이 기업이 다뤄야 할 핵심 이슈임을 확인함. 이후 2016년 세이브더칠드런 핀란드와 협력하여 아동 자문 패널(Children's Advisory Panel, CAP)을 설계하고, 아동권리와 경영원칙을 기업 운영의 실질적 지침으로 활용하기 시작함.³⁶⁾ 아동 자문

패널(CAP)은 연 1회 정성·정량 조사를 결합한 구조로, 공동 창작 워크숍(약 4,000명)과 디지털 설문(12,000명 이상)을 통해 10~18세 아동·청소년의 온라인 경험을 직접 수집함. 그 결과는 내부 사업 부문 논의, 디지털 교육 프로그램 개발, 고객·이해관계자 대상 공유 등에 활용되었으며, 세이브더칠드런 핀란드와의 가이드 공동 제작 및 책임 있는 게임 가이드라인 수립 등의 성과로 이어짐.

분석 | Telia는 중요성 평가에서 도출한 아동 관련 이슈를 CAP(Children's Advisory Panel)라는 정기적 참여 메커니즘으로 제도화하여, 아동 참여가 일회성 CSR 활동이 아닌 ESG 전략 수립의 실질적 피드백 체계로 작동하도록 설계함. CAP 결과가 마케팅 캠페인·직원 교육·서비스 설계에 반영된 것은 경영진의 명시적 지지가 선행되었기에 가능했음.

출처: Telia Company, 'Children's participation', <https://www.teliacompany.com/en/articles/childrens-participation>,

(접속일: 2026.4.24.);

Telia Company, 'Telia Children's Advisory Panel: Giving Children a Voice About Their Online Liv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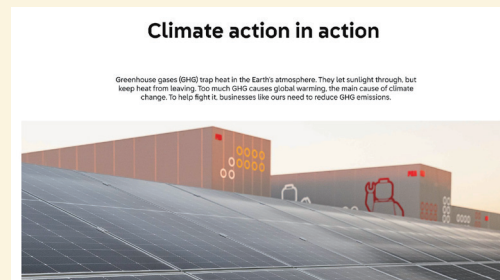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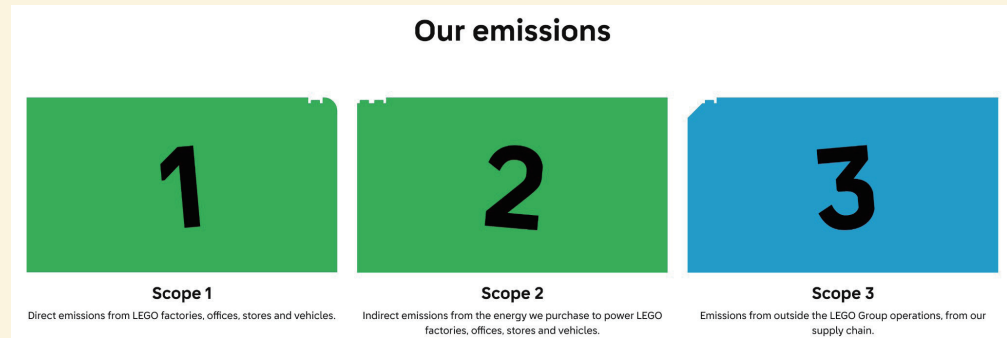
<https://www.kidsincluded.report/telia-company>, (접속일: 2026.4.24.)

³⁶⁾ Telia Company, "Children's Rights and Business Principles", <https://www.teliacompany.com/en/articles/childrens-rights-and-business-principles>. (접속일: 2026. 5. 15.)

짧은 문장으로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기업의 환경 목표를 제시한 LEGO

주요 관련 지표

B1.2.



LEGO Group은 2020년 SBTi 승인 절대 온실가스 감축 목표(2032년까지 2019년 대비 37% 감축, 2050년 넷제로)를 설정했음. LEGO 공식 Climate Action 페이지는 자사의 과학기반 감축목표 이니셔티브(SBTi)를 아동·일반 독자가 이해 가능한 평이한 언어로 다음과 같이 설명함. “온실가스(GHG)는 지구

대기권에 열을 가둠. 햇빛은 통과시키지만 열이 빠져나가지 못하게 함. 너무 많은 GHG는 지구온난화를 일으키고, 이는 기후변화의 주요 원인임. 이에 대응하기 위해 우리 같은 기업은 GHG 배출을 감축해야 함³⁷⁾”이라는 짧은 문장 단위 설명을 제공하며, 같은 페이지에서 “2020년에 우리는 대형 완구기업 최초로 2032년까지 2019년 대비 절대 GHG 배출량을 37% 감축하는 과학기반 목표를 발표함. 이 목표는 파리협정과 정합하며 SBTi 승인을 받음”이라고 자사 목표를 명시함.

같은 페이지에서 Scope 1~3의 개념을 짧고 간단하게 소개하며, 인포그래픽을 활용하여 자사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공개함.

분석 I LEGO는 환경 목표 공시 내용을 아동의 이해 수준에 맞춰 기술함으로써, 특정 연령대나 전문 지식을 전제하지 않고도 누구나 읽고 이해할 수 있는 작성 방식을 채택함. 이는 아동 눈높이에 맞춘 서술이 정보의 질을 낮추지 않고, 오히려 접근 가능한 수용자의 범위를 확장하는 선순환으로 이어짐을 시사함. 사회적 약자를 기준으로 설계된 정보 체계가 곧 모두를 위한 정보 체계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준 기업 사례로 판단됨.

출처: LEGO Group, 'Climate action in action', <https://www.lego.com/en-us/sustainability/climate-action>, (접속일: 2026.5.5.)

³⁷⁾ (원문) Greenhouse gases (GHG) trap heat in the Earth's atmosphere. They let sunlight through, but keep heat from leaving. Too much GHG causes global warming, the main cause of climate change. To help fight it, businesses like ours need to reduce GHG emissions.

[지표 B - 아동권리 관점 매핑표]

출처	조항 번호	조항 내용	아동권리와의 연관성
국제규범 - 아동권리 규범적 근거			
유엔아동 권리협약 (UNCRC)	제12조	의견 표명권	아동은 자신과 관련된 사안에 대해 의견을 표명할 권리를 가지며, 그 의견은 진지하게 받아들여져야 함. 전략 수립 단계에서 아동의 의견이 청취 단계를 넘어 의사결정 구조에 통합되는지가 본 아동권리 지표의 핵심임. 유니세프의 유럽 지속가능성 공시기준(ESRS) 가이드는 중요성 평가 과정에서 아동 또는 그 대리인(보호자·교사 등)을 이해관계자로 참여시킬 것을 권고함.
	제17조	정보 접근권	아동이 자신의 권리·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에 접근할 권리. 이해관계자 관여 절차에서 아동이 의견을 형성·표명하기 위한 전제 조건임.
아동권리와 경영원칙 (CRBP)	원칙 1, 원칙 4, 원칙 7 ³⁸⁾	아동권리 존중·지원 책임 및 환경·미래세대 보호	기후변화·오염이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이 성인보다 심각·장기적임을 적시하며, 이를 근거로 전략 수립 시 아동의 의견을 청취할 것을 요구함.
공시기준 - 보고·평가 프레임워크			
글로벌 보고 이니셔티브 (GRI)	2-6	활동, 가치사슬 그리고 기타 비즈니스 관계	가치사슬 전반의 활동·관계 공시. 아동이 영향받는 가치사슬 단계(지역사회, 소비자 등)를 식별하고, 각 단계별 관여 전략을 수립하기 위한 출발점임.
	2-25	조직이 기여한 것으로 확인된 부정적 영향을 해결하기 위한 프로세스	부정적 영향 식별·해결 프로세스 공시. 아동에게 미치는 부정적 영향(아동노동, 환경오염, 기후재난 등)이 별도 식별·관리 프로세스를 통해 다루어지는지 평가. 전략 수립 단계에서 영향 완화·구제 절차가 통합되는지가 핵심임.
	2-26	책임 있는 비즈니스 활동을 위해 우려를 제기할 수 있는 프로세스	이해관계자가 우려·고충을 제기할 수 있는 절차 공시. 아동(또는 대리인)이 접근 가능한 형태의 우려 제기 채널이 있는지, 절차에 아동 친화적 설계가 반영되어 있는지가 제도의 실효성을 좌우함.
	2-29	이해관계자 참여에 대한 접근방식	이해관계자 참여 결과가 기업의 기후·환경 전략에 반영되는 환류 구조도 중요함. 아동·대리인의 의견이 의사결정 단계에서 검토·반영된 경로가 추적 가능하고, 그 결과가 참여자에게 회신되는 양방향 체계로 접근해야 함.
	3-1	중요 이슈를 결정하는 프로세스	중요성 평가 프로세스 공시. 평가 과정에 아동·대리인이 이해관계자로 참여하는지가 전략 수립의 정합성을 결정함. 이를 위해 의견 청취를 정기적으로 진행하고 교통비 지원·안전한 장소 제공·보호자 동의 절차 등 실질적 참여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함.

³⁸⁾ 원칙 1: 아동권리 존중의 책임을 다하며, 아동권리를 지원할 것을 약속합니다.

원칙 4: 모든 기업 활동과 시설에서 아동을 보호하고 안전을 도모합니다.

원칙 7: 환경 및 토지 취득·사용과 관련하여 아동의 권리를 존중합니다.

글로벌 보고 이니셔티브 (GRI)	3-3	중요 이슈 관리	식별된 중대 이슈의 관리 방식 공시. 아동권리 관련 내용이 중대 이슈로 도출된 경우, 전략·정책·이행 단계에서 어떻게 관리되는지 평가함.
유럽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ESRS)	SBM-2	조직의 사업운영 관련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반영하는 절차와 방식	이해관계자 관여 방식과 그 결과의 전략 반영 공시. 유럽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은 '취약한 상황에 있는 사람들(persons in vulnerable situations)'을 별도 이해관계자 범주로 인식하며 아동을 암묵적으로 포함함. 전략 수립 이전 단계에서 아동·대리인의 의견이 어떻게 수렴·반영되는지 고려가 필요함.
	S3-2	조직의 활동으로 인해 영향을 받는 지역사회와 소통하는 절차	기업 활동으로 영향받는 지역사회와의 소통 절차 공시. 아동은 기후재난·오염·자원고갈 등에서 가장 취약한 지역사회 구성원이므로, 지역사회 소통 절차에 아동·대리인 접근성이 포함되는지에 주목함.
	S3-3	지역사회가 부정적 영향을 제보할 수 있는 채널, 해당 제보사항에 대응하는 절차	지역사회 구성원이 부정적 영향을 제보할 수 있는 채널과 대응 절차 공시. 전략·관여 단계에서 아동이 접근 가능한 제보 경로가 마련되어 있는지, 대응 절차에 아동 보호 원칙이 반영되어 있는지 평가함.
	S4-2	조직의 제품·서비스로 인해 영향을 받는 고객 및 소비자들과 소통하는 절차	제품·서비스로 영향받는 고객·소비자와의 소통 절차 공시. 아동이 직접 소비자이거나 가족 구성원으로서 영향을 받는 경우, 소통 절차에 아동 친화적 형식·아동 데이터 보호 원칙이 통합되었는지 평가함.
국제회계 기준 기후 관련 공시 (IFRS S2)	전략, 위험관리	기후 위험 및 기회의 사업·전략·재무계획 영향 공시 (단·중·장기 위험 및 기회, 사업·전략·재무 영향, 시나리오 분석)	기업이 식별한 각 기후 관련 위험 및 기회에 대해, 시계열적(단기·중기·장기) 분석을 요구. 아동을 포함한 미래세대는 전형적인 장기 영향 집단이므로, 전략 수립 시에 세대 간 형평성과 미래세대 영향이 반영되는지가 핵심. 시나리오 분석에서 아동·취약계층 영향이 별도 차원으로 다뤄지는지 평가함.

3.3.

C: 책임과 구제

(기업은 아동의 피해에 대한 책임을 인식하고, 구제 방법을 마련하였나요?)

책임과 구제 영역에서의 공백을 점검하는 C 지표는 기업이 아동권리영향평가를 통해 기후·환경 피해를 사전에 식별하고 있는지(C1), 피해 아동 또는 보호자가 실제로 접근 가능한 아동 친화적 고충처리 창구를 운영하고 있는지(C2), 그리고 이러한 대응이 일회성 제도 마련에 그치지 않고 임직원의 교육과 역량으로 내재화되어 있는지(C3)를 진단합니다.

3.3.1. C1. 영향평가 체계에 아동권리 통합

C1 기준에서는 기업이 수행하는 환경·인권영향평가에 아동권리를 통합하고, 사업장 등 기업의 자산이 아동의 생활환경과 어떻게 근접해 있는지 식별·공개하고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3.3.1.1. 평가 기준

아래 하위 기준(C1.1~C1.2)을 바탕으로 기업의 현황을 점검하여 해당 여부를 확인합니다.

하위 기준	점검 내용	해당 여부
C1.1	아동권리영향평가(CRIA) 또는 기업의 환경·인권영향평가에 아동권리를 통합하고, 전 사업장·활동에 적용하며, 기업의 환경·인권 실사에서 아동 또는 대리인 참여형 실사를 실시하는가	Y / N
C1.2	사업장·자산이 학교·병원·놀이시설 등 아동의 생활환경과의 공간적 근접성을 식별·공개하고, 근접으로 인한 아동권리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는가	Y / N

C1.2 지표 답변을 위한 사업장 근접성·아동영향 점검 체크리스트

주요 관련 지표 C1.2.

※ 본 내용은 지표 응답을 위한 참고용 점검 리스트입니다. 실무자가 다양한 관점에서 검토를 시작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각 항목은 기업의 사업 특성과 운영 환경에 맞춰 유연하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산업 부문	점검 사항 (예시)
제조·산업단지	• 공개 가능한 데이터) 공장 배출물(미세먼지, NOx, VOCs, 중금속)과 아동의 생활환경*과의 거리 등 → 우리 회사의 A공장 부지 경계로부터 반경 500m 이내에 위치한 초·중·고교 및 어린이집·아동복지시설의 수와 명단은 [] 와 같다. → 해당 시설 인접 측정망의 PM2.5·이산화질소(NO2) 평균치를 자체 또는 지자체 자료로 모니터링하고 있다. *학교, 영유아 교육·보육기관, 놀이터 등
물류·유통·이커머스	• 공개 가능한 데이터) 물류센터 트럭 운행 경로와 통학로의 교차 여부 → 당사 물류센터 진출입로와 인근 학교 통학로의 평면 중첩 여부는 [] 이다. → 통학시간대(오전 7~9시, 오후 2~5시) 트럭 운행 빈도는 [] 회이며, 공회전 제한 정책을 [운영/미운영] 중이다.
광업·건설·인프라	• 공개 가능한 데이터) 비산먼지·소음·진동·오염물질이 인근 아동시설에 미치는 영향 → 당사 사업장 반경 200m 내 학교·어린이집 등 아동시설은 [] 개이며, 위치는 [] 이다. → 통학시간대(7~9시, 14~17시) 작업 제한을 [적용/미적용] 하고 있으며, 관련 관리 기준은 [] 이다.
화학·정유·LNG	• 공개 가능한 데이터) 사고 시 영향 반경(vulnerability zone) 내 아동 노출 가능성 → 당사 사업장의 화학사고 발생 시, 영향 반경 내 학교·아동복지시설·의료시설은 [] 개이며, 주요 시설은 [] 이다. → 인근 학교를 포함한 비상대피 훈련을 [정기적으로 시행/비정기적으로 시행/미실시]
농업·종자·축산	• 공개 가능한 데이터) 농약·비료·분뇨 살포와 학교·통학로 간 거리 및 시간대 → 당사 농약·비료·분뇨 살포 지역 반경 [] m 내 학교 및 아동시설은 [] 개이다. → 살포 일정은 통학시간 및 운동장 이용시간과 [중복/비중복] 되도록 관리하고 있다.

산업 부문

점검 사항 (예시)

디지털·통신·미디어

- 공개 가능한 데이터) 물리적 시설(기지국·데이터센터)과 학교 간 거리 및 노출 환경
 - 당사 데이터센터 및 통신시설 반경 [] m 내 학교·아동시설·주거시설은 [] 개이다.
 - 해당 시설의 소음·전력 사용·발열 등 지역사회 영향은 [측정/미측정] 하고 있으며, 관리 기준은 아래와 같다.
 - 소음: [] dB / 관리 기준: []
 - 전력 사용: [] / 지역 부담 평가: [실시/미실시]
 - 발열: 서버 냉각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열 [측정/미측정], 시설 외부 열 환경 변화 [측정/미측정]

3.3.1.2. 왜 중요한가요?

기업 활동이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식별하고 평가하는 것은 피해가 발생한 이후의 구제보다 훨씬 효과적인 보호 수단입니다. 기후위기 시대에 기업의 환경 영향은 사업장 인근 아동의 건강과 안전에 직접적으로 연결되며, 그 영향은 태아기부터 시작되어 인지·행동 발달, 학업 성취, 장기 건강에 이르기까지 생애 전반에 걸쳐 지속됩니다.³⁹⁾ 유럽연합의 기업 지속가능성 실사 지침(CSDDD)은 잠재적 영향을 포함한 사전적 식별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피해 발생 이후 구제보다 사전 영향평가가 더 효과적인 보호 수단을 규범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3.3.1.3. 함께 보면 좋을 자료

인권 실사에 아동권리를 반영한 Verizon의 아동권리영향평가

주요 관련 지표

C1.1.



미국 최대 무선 통신 기업인 Verizon은 2020~2021년 전사 차원의 아동권리영향평가(CRIA)를 수행하여, 제품·서비스·공급망 등 사업 전반에서 아동권리 영향을 점검했음. 평가는 디지털 환경을 중심으로 아동 안전, 개인정보 보호, 접근성 등 주요 이슈를 식별했음.

분석 | Verizon의 아동권리영향평가(CRIA) 보고서는 아동권리영향평가를 기업 전반에 적용하고, 인권 실사 체계에 통합한 사례임. 외부 전문가를 활용하고, 내부 직원과 외부 전문가 인터뷰를 통해 이해관계자 의견을 청취함. 아동 당사자의 직접 참여가 아니라 아동권리 전문가를 통한 간접적인 방식으로 의견이 반영된 것으로 보임. 그러나 아동권리영향평가(CRIA) 보고서 평가 결과가 기업의 제품 개발, 정책, 거버넌스 체계에 통합되어 후속 조치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참고할 만한 사례임.

출처: Verizon, 'Child Rights Impact Assessment', (2022.6.)

³⁹⁾ A. D. Bergstra, B. Brunekreef, and A. Burdorf, "The Effect of Industry-Related Air Pollution on Lung Function and Respiratory Symptoms in School Children," *Environmental Health* 17, (2018): Article 30.;
C. Persico, D. Figlio, and J. Roth, "Inequality before Birth: The Developmental Consequences of Environmental Toxicants," *Journal of Labor Economics* 38(S1), (2020): S199 – S232.

3.3.2. C2. 아동권리 고충처리·구제 및 대응 역량 내재화

C2 기준에서는 두 가지를 살펴봅니다. 첫째, 기업이 기후재난·환경오염 피해 아동(또는 보호자)이 접근 가능한 고충처리 메커니즘을 갖추고, 아동 친화적으로 설계하고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둘째, 기업이 임직원(경영진 및 이사회 포함)이 기후위기 시대의 아동권리를 이해하고 대응할 수 있는 정기적·체계적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지를 점검합니다.

3.3.2.1. 평가 기준

아래 하위 기준(C2.1~C2.2)을 바탕으로 기업의 현황을 점검하여 해당 여부를 확인합니다.

하위 기준	점검 내용	해당 여부
C2.1	기후재난·환경오염 피해 아동(또는 보호자)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창구(설문·인터뷰·캠페인 등)를 제공하고, 제기된 의견에 대한 답변과 처리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는가	Y / N
C2.2	임직원(경영진 및 이사회 포함)이 기후위기 시대의 아동권리(아동의 안전·건강·의견 존중 방법 등)를 배우는 정기적·체계적 프로그램을 운영하는가	Y / N

3.3.2.2. 왜 중요한가요?

피해가 실제로 발생했을 때 아동이 기업에 직접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창구가 마련되어 있는지도 피해의 예방만큼 중요합니다. 국제 NGO 단체인 플랜 인터내셔널(Plan International)의 아동 친화적 피드백 메커니즘 가이드는 기존의 고충처리 창구가 성인 중심으로 설계되어 아동 입장에서는 절차가 복잡하고 접근 경로가 한정되어 있으며 응답을 기대하기 어려운 구조라고 진단합니다. 또한 아동이 다양한 방식(대면 대화·또래 모임·온라인 등)으로 표현한 의견을 기업이 경청하고, 수집한 의견에 대한 대응과 조치 결과까지 아동에게 다시 공유하는 환류 구조를 갖추어야 한다고 권고합니다.⁴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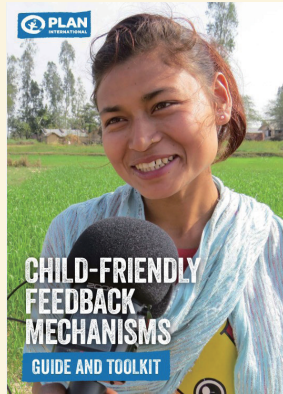
제도를 만드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현장에서 일하는 임직원이 기후위기가 아동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해하고 대응할 수 있어야, 아동권리 정책이 문서 안에만 머물지 않고 실제로 작동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한 정기적이고 체계적인 교육은 아동권리가 기업 운영 곳곳에 뿌리내리도록 하는 핵심 수단이며, 이 두 가지가 함께 갖추어질 때 비로소 책임과 구제 체계가 완성됩니다.

⁴⁰⁾ 해당 기관은 피드백 메커니즘을 '아동·청소년·지역사회 등 이해관계자가 특정 기업의 활동에 제시하는 의견을 수집·공유하여 활동을 개선하는 체계'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피드백은 긍정·부정 의견과 개선 제안을 모두 포괄하며, 불만은 그중 부정적 의견에 해당합니다. 피드백 메커니즘은 기업이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경청하고 설명하며 책임을 지는 책무성(accountability)을 이행하기 위한 적절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출처: Plan International, Child-Friendly Feedback Mechanisms: Guide and Toolkit, (2019))

플랜 인터내셔널의 아동 친화적 피드백 메커니즘(Child-Friendly Feedback Mechanisms)

주요 관련 지표

C2.1.



플랜 인터내셔널은 아동 권리 신장을 위해 활동하는 국제구호개발 NGO로 2018년 ‘아동 친화적 피드백 메커니즘’을 공개함. 이 자료는 아동과의 소통 창구 마련 과정에서 아동·청소년 당사자 협의의 의무화하며, 대면 회의, 전화·문자·이메일·온라인 등 다양한 채널을 조합할 것을 권고함. 또한 채널 설계 시 연령·성별·다양성·안전·비밀 보장 등 다각도에서 아동의 실질적 참여를 위한 가이드를 제공하고 있음.

분석 | 해당 자료를 기반으로 기업 실무자는 고충처리 메커니즘을 아동 친화적으로 점검할 구체적인 방법을 확인할 수 있음. 일례로 해당 자료에서는 △기업이 디지털 창구(설문 앱·온라인 폼 등)를 채택할 때 강력한 개인정보 보호 이력을 갖춘 서비스를 선택해야 하며, △디지털 격차로 인한 특정 아동 집단의 배제를 차단하기 위해 비디지털 채널을 함께 운영해야하고, △아동과 대면 소통 시 남성·여성 담당자를 각각 배치하는 등 성별·연령별 안전 요건까지 구체적으로 권고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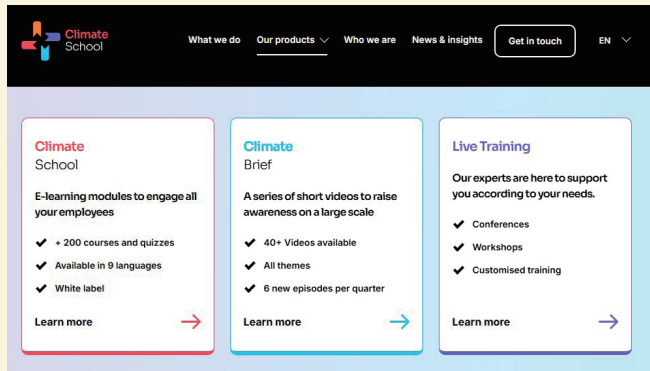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제시한 ‘기업책임경영을 위한 실사지침’과도 같은 맥락임. 해당 실사지침은 경영시스템 내재화, 리스크 평가, 영향 완화, 모니터링, 이해관계자 의사소통, 구제절차의 6단계를 제시하며 특히 5·6단계가 Plan International이 강조하는 피드백 메커니즘과 연결됨.

출처: Plan International, Child-Friendly Feedback Mechanisms: Guide and Toolkit, (2019).; 국민권익위원회, 『기업책임경영의 기초,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OECD(2018) 기업책임경영을 위한 실사지침(Due Diligence Guidance for Responsible Business Conduct), https://www.acrc.go.kr/briefs/8a121e2c6ece295d48d1330014867a29016f07dda72060e16ab92a59e9fb5c92/sub_3.html. (접속일: 2026. 5. 20.).

Deutsche Telekom · Saint-Gobain · La Banque Postale - AXA Climate School 활용한 환경 교육 모델

주요 관련 지표

C2.2.



AXA Climate School은 보험사 AXA가 2021년 출범한 기업 임직원 대상 기후·지속가능성 교육 플랫폼임. 이 플랫폼은 기존 콘텐츠와 맞춤형 학습 설계를 결합해 지속가능 전환이 기업의 사업과 임직원에게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도록 도움. Deutsche Telekom, Saint-Gobain, La Banque Postale 등 글로벌 기업이 도입해 전 세계 임직원의 기후변화를 이해하고 실무에 적용할 수 있도록 돕는 교육에 활용하고 있음. 프랑스 우체국 은행(La Banque Postale)은 해당 플랫폼을 활용하여 30명 단위 대면 교육을 운영하고, 교육 내용을 사내 전반으로 확산하는 폭포식(cascade) 교육 모델을 개발했음.

분석 I 해외에서는 Climate School과 같은 외부 전문 플랫폼을 활용해 전사 단위의 기후·지속가능성 교육을 운영하는 사례가 확산되고 있음. 표준화된 콘텐츠와 맞춤형 학습 설계를 결합해 임직원 참여를 빠르게 확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음. 또한 폭포식(cascade) 방식과 같은 구조를 통해 조직 내부 확산과 문화 정착을 동시에 도모할 수 있음. 다만 현재 해당 플랫폼에서 제공되는 콘텐츠는 주로 일반적인 기후위기 대응 역량에 초점을 두고 있어 아동권리와 같은 특정 사회적 관점을 별도로 통합하지 않는 한계가 존재함. 따라서 기업은 아동권리 관점이나 취약계층 영향 분석을 추가적으로 보완해야 함.

참고 I 기업이 자체적으로 교육 프로그램을 구상하는 것이 어렵다면, 전문 기관의 교육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음. 세이브더칠드런 코리아는 '어린이가 만드는 기후세상'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음. 본 교육 프로그램은 기후위기를 아동권리 관점에서 바라보는 기후위기·아동권리 인식 교육으로, 유아와 초등학생 대상 교육을 통해 기후위기와 아동권리의 연관성을 이해하고 아동이 직접 기후행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함. 이러한 사례는 기업이 아동권리 관점의 기후 대응을 이해하고, 임직원 교육이나 지역사회 프로그램을 설계할 때 참고할 수 있는 기초 자료로 활용 가능함.

출처: Climate School, 'Accelerate your Sustainability learning', <https://axaclimateschool.com/>; 세이브더칠드런 코리아, "어린이가 만드는 기후세상", <https://learn-cc.co.kr/program>. (접속일: 2026. 5. 15.)

[지표 C - 아동권리 관점 매핑표]

출처	조항 번호	조항 내용	아동권리와의 연관성
국제규범 - 아동권리 규범적 근거			
유엔아동 권리협약 (UNCRC)	제3조	아동 최선의 이익	[식별 단계] 아동에 대한 영향 식별 시 '아동 최선의 이익'을 우선 기준으로 적용. 일반 ESG 위험 평가에 머물지 않고 아동 특화 영향을 별도로 식별할 의무의 규범적 근거임.
	제6조	생존·발달권	[식별 단계] 아동의 생존·발달에 미치는 영향은 돌이킬 수 없으므로 통상의 위험 식별 기준보다 강화된 식별이 요구됨. 기후·환경 영향 평가 시 아동 발달 영향을 별도 차원으로 식별할 근거임.
	제12조	의견 표명권	[식별 단계] 영향 식별 과정에서 아동(또는 대리인)의 의견을 수렴해야 하는 근거로 작용함. 영향 식별이 아동 당사자의 참여를 통해 이뤄지는지가 평가 대상임.
	제24조	건강권	[식별 단계] 대기·수질 오염, 유해물질 등 기업 활동이 아동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식별할 근거임. 환경보건 관점에서 아동 특화 노출·민감도를 별도 식별하는지 확인함.
	제27조	적절한 생활수준권	[식별 단계] 기업 활동이 주거·영양 등 아동의 발달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식별할 근거임. 이에 따라 빈곤·취약 가정 아동에 대한 차등적 영향 식별이 필요함.
	제17조	정보 접근권	[예방·완화] 아동이 자신과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에 접근할 권리임. 아동 친화적 형식의 위험 정보 제공이 예방의 전제 조건임.
	제19조	폭력·학대로부터의 보호	[예방·완화] 기업 활동·시설·공급망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아동 대상 폭력·착취·방임을 사전 예방할 의무의 근거임.
	제32조	경제적 착취·아동노동 보호	[예방·완화] 아동노동·위험노동으로부터의 보호 의무. 공급망 아동노동 위험에 대한 사전 식별·예방 체계의 핵심 규범임.
	제34·36조	성적 착취·기타 모든 형태의 착취 보호	[예방·완화] 디지털 플랫폼·마케팅·공급망 등에서 발생 가능한 아동 착취 위험을 사전 차단할 의무의 근거임.
	제35조	유괴·매매·인신매매 방지	[구제 단계] 공급망·운영 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인신매매 위험에 대한 적극적 대응 및 피해자 구제 의무를 확인할 수 있음.
아동권리와 경영원칙 (CRBP)	-	아동권리 존중 책임 및 미래세대 환경 지원	아동이 기후·환경 영향에 더 취약하고 장기적으로 노출됨을 명시하며, 피해 예방·완화·구제의 영향관리 사이클 전반에 아동 관점을 통합할 것을 요구함.

공시기준 - 보고·평가 프레임워크

글로벌 보고 이니셔티브 (GRI)	2-6	활동, 가치사슬 그리고 기타 비즈니스 관계	[식별] 가치사슬 전반의 활동 범위 공시. 영향관리 관점에서는 아동 영향이 발생할 수 있는 가치사슬 단계(공급망 노동, 제품 사용, 폐기 등)를 식별하기 위한 출발점임.
글로벌 보고 이니셔티브 (GRI)	2-24	책임 있는 비즈니스 활동을 위한 정책적 약속 통합 및 이행 방법	[예방·완화] 정책 약속의 운영 통합 공시. 아동권리 보호 약속이 영향 식별·예방 절차에 어떻게 내재화되었는지 평가함.
	2-25	조직이 기여한 것으로 확인된 부정적 영향을 해결하기 위한 프로세스	[구제] 부정적 영향 해결·구제 프로세스 공시. 아동에 대한 부정적 영향 발생 시 아동 친화적 구제가 가능한지 확인할 수 있음.
	2-26	책임 있는 비즈니스 활동을 위해 우려를 제기할 수 있는 프로세스	[식별·구제] 우려·고충 제기 절차 공시 과정임. 아동(또는 대리인)이 접근 가능한 채널이 마련되어 있는지 등 채널의 아동 친화적 설계 여부는 책임 있는 비즈니스 활동의 일환임.
	3-3	중요 이슈 관리	[예방·완화] 식별된 중대 이슈의 관리 방식 공시 과정임. 아동권리 관련 내용이 중대 이슈일 경우 예방·완화 조치가 어떻게 설계·운영되는지 점검함.
	408-1	아동노동 발생 위험이 높은 사업장 및 공급업체	[식별·예방] 아동노동 위험 사업장·공급업체의 식별 및 관리 공시 과정임. 유엔아동권리협약(UNCRC) 제32조와 직결되는 지표임.
	416-1	제품·서비스의 안전보건 영향평가	[식별·예방] 제품·서비스가 건강·안전에 미치는 영향 평가 공시 과정임. 아동 사용자·소비자 특화 안전성 평가가 포함되는지를 확인함.
	417-1	정보 및 라벨을 위해 필요한 제품 및 서비스 정보 유형	[예방·완화] 제품·서비스 정보·라벨링 공시임. 아동 사용 제품의 위험 정보가 아동·보호자에게 명확히 전달되는지 점검함(유엔아동권리협약 제17조 연계).
	417-3	마케팅 커뮤니케이션과 관련된 규정 위반	[예방·완화] 마케팅 위반 사례 공시. 아동 대상 부적절·기만적 마케팅 통제가 작동하는지 평가함(유엔아동권리협약 제36조 연계).
	418-1	고객 개인정보보호 위반 및 고객 데이터 분실과 관련하여 제기된 불만 건수	[예방·완화·구제] 개인정보 침해 사례 공시. 아동 데이터 보호의 특별한 중요성을 고려할 때 별도 식별·관리가 필요한 영역임.

유럽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ESRS)	GOV-2	최고의사결정기구가 보고·심의·의결한 지속가능성 영향·위험·기회 요인	[식별] 영향·위험 정보의 이사회 보고·처리 체계 공시. 아동 관련 영향이 보고 체계에 포함되어 거버넌스 의사결정에 반영되는지 확인함.
	IRO-1	지속가능성 이슈의 영향·위험·기회를 식별 및 평가하는 프로세스	[식별] 이중중요성 평가 프로세스. 기업에 중요한 이슈를 파악할 때, 기업이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식별·평가의 맥락에서 아동 권리가 다뤄지는지 확인함.
	S3-3	지역사회가 부정적 영향을 제보할 수 있는 채널, 해당 제보사항에 대응하는 절차	[구제] 지역사회 제보 채널·대응 절차 공시. 아동을 포함한 취약계층이 접근 가능한 제보 경로와 아동 보호 원칙이 반영된 대응 절차의 존재가 책임성의 척도라고 할 수 있음.
	S3-4	지역사회에 대한 중대한 영향을 조치 및 완화하는 방식, 해당 조치 및 완화의 효과	[예방·완화] 지역사회 영향에 대한 조치·완화 활동 및 효과 공시. 아동·취약계층에 대한 중대한 영향 완화가 설계·실행되는지를 점검함.
유럽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ESRS)	S3-5	지역사회에 대한 중대한 위험과 영향 관리에 관한 조직의 목표	[지표·목표] 지역사회 위험·영향 관리 목표 공시. 정성적인 선언에서 더 나아가, 정량 목표 설정 및 성과 측정 여부가 완결성 확보의 핵심임.
	S4-3	고객 및 소비자가 제품·서비스 사용 고충, 피해, 부정적 영향을 제보할 수 있는 채널	[구제] 소비자 제보 채널 공시. 아동 소비자가 접근 가능한 형태의 채널인지, 아동 데이터 보호 원칙이 반영되었는지 평가함.
	S4-4	고객 및 소비자의 고충, 피해, 영향을 조치 및 완화하는 방식, 해당 조치 및 완화의 효과	[예방·완화·구제] 소비자 영향에 대한 조치·완화 활동 및 효과 공시. 아동 소비자의 특별한 취약성을 반영한 완화 조치 설계 평가함.
	G1-1	최고의사결정기구의 윤리경영 선언, 관리·감독에 관한 책임과 역할, 윤리헌장 및 실천규범 등의 요구사항	[예방] 비즈니스 행동 정책 공시. 아동 대상 마케팅 윤리, 공급망 아동노동 방지 등 아동 관련 행동 규범이 정책 수준에서 다뤄지는지 평가함.
	G1-3	비윤리행위/불공정거래 근절 및 사전예방 활동, 조사 및 내부보고 체계	[구제] 내부신고 체계 공시. 책임성·투명성의 제도화 장치로서, 아동 권리 침해 관련 내부신고가 작동하는지 평가함.
국제회계 기준 기후관련 공시 (IFRS S2)	위험관리	기후 위험 식별·평가·관리 절차 및 전사 리스크관리 통합	[식별·예방·완화] 기업이 기후 관련 위험을 식별, 평가, 우선순위 설정 및 모니터링하기 위해 사용하는 프로세스 및 관련 정책 등을 공시. 아동에 대한 영향이 기후 위험 평가 항목에 포함되는지 확인함.
	지표 및 목표	기후 위험·기회 평가 및 관리 지표, 온실가스 배출량, 목표 및 성과	[지표·목표] 위험·기회 평가 지표, 온실가스 배출량(Scope 1·2·3), 목표 대비 성과 공시.

(기업의 기후·환경 영향은 아동의 삶과 권리에 어떤 영향을 주나요?)

도전 지표인 D는 기업이 아동의 취약성을 기업의 감축 목표, 적응 전략, 관리 지표에 실제로 내재화하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항목입니다. 단순한 사회공헌 활동이 아닌 기업의 환경과 기후 목표, 적응 전략, 리스크 관리 지표 안에 아동 취약성이 구체적으로 반영되어 있는지를 서술식으로 기록합니다.

연구진은 2025년 12월, 국내 시가총액 상위 100대 기업의 ESG 보고서를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A·B·C에 해당하는 기준인 아동을 이해관계자로 인정하거나, 의사결정 과정에 아동 관점을 반영하거나, 구제 체계를 갖추는 것을 부분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기업은 일부 확인되었습니다. 그러나 아동의 취약성을 기업의 감축 목표와 적응 전략, 관리 지표에 실제로 반영한 기업은 100개의 기업 중 단 한 곳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기업들이 아동의 권리를 인권 측면에서 다루고 있지만, 기후 대응 전략과 연결한 경우는 전무한 것입니다. 이것이 D를 도전 지표로 설정한 이유입니다. 현재 단계에서는 이행이 쉽지 않은 기준이지만, 아동권리 기반의 기후대응을 실현하기 위해 기업의 기후대응에서 반드시 갖추어야 할 핵심 항목입니다.

A·B·C가 절차와 체계를 갖추었는지를 묻는다면, D는 그 체계가 실제로 아동의 삶에 변화를 만들어내고 있는지를 묻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D는 현재의 한계를 확인하는 지표인 동시에 기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 지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평가 시에는 보고서에서 확인된 내용과 기업이 공개한 목표와 지표를 작성합니다. 그러나 아동 대상 환경 교육이나 캠프, 사회공헌 활동만으로는 해당 지표를 충족한다고 할 수 없습니다. 해당 활동이 기업의 환경·기후·ESG 목표 및 리스크 관리 체계와 구조적으로 연결되고 각 상위지표에 대한 핵심성과지표(KPI)가 확인될 때 비로소 충족된 것으로 판단합니다.

3.4.1. 기업 활동이 기후와 환경,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 분석

기업의 활동에서 비롯된 대기오염과 유해물질 배출이 아동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다수의 연구를 통해 확인되고 있습니다. Bergstra et al.(2018)은 산업시설 인근에 거주하는 아동이 그렇지 않은 아동에 비해 천식·폐기능 저하 등 호흡기 질환 발생률이 유의미하게 높다는 것을 보여주었으며,⁴¹⁾ Persico, Figlio & Roth(2020)는 산업부지의 유해화학물질에 태아기에 노출된 아동이 인지장애 진단 가능성이 비교적 높다는 연구 결과를 제시한 바 있습니다.⁴²⁾ Perera(2018) 역시 화석연료 연소로 인한 오염이 아동의 건강과 발달에 태아기부터 생애 전반에 걸쳐 누적적 영향을 미친다고 지적했습니다.⁴³⁾ 이처럼 기업의 환경과 기후 영향은 아동에게 직접적이고 장기적인 경로로 작용합니다. 따라서 기업이 자사 사업 활동이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을 명시적으로 분석하고 공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영향 경로	구체적인 영향 내용	대책 보유 여부	대책의 구체적 내용 & 미공개 사유
직접/	[서술형 지표 작성]	Y / N	[서술형 지표 작성]
간접/	예: 사업장 → 인근 영유아 호흡기 발달 저해 / 사업장 폐쇄 →		
해당없음	노동자 자녀 교육·돌봄 단절 등		

※ 아동권리 선도 기업으로 나아가기 | 영향 경로를 구체적으로 식별할 수 있고, 대책의 구체적인 내용을 서술할 수 있다.

⁴¹⁾ A. D. Bergstra, B. Brunekreef, and A. Burdorf, "The Effect of Industry-Related Air Pollution on Lung Function and Respiratory Symptoms in School Children," *Environmental Health* 17, (2018): Article 30.

⁴²⁾ C. Persico, D. Figlio, and J. Roth, "Inequality before Birth: The Developmental Consequences of Environmental Toxicants," *Journal of Labor Economics* 38(S1), (2020): S199 – S232.

⁴³⁾ F. Perera, "Pollution from Fossil-Fuel Combustion Is the Leading Environmental Threat to Global Pediatric Health and Equity," *International Journal of Environmental Research and Public Health* 15(1), (2018): Article 16.

3.4.2. 가치사슬 전반에서 아동 영향 식별

기업이 직접 운영하는 사업장만을 점검하는 것으로는 아동에 대한 영향의 대부분을 놓칠 수 있습니다. Görg et al.(2023)의 분석에 따르면, 유럽 권역 내 기업 중 약 8.5%만이 1차 공급망에서 아동 및 강제노동 위험에 직접 노출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공급망 범위를 2차 협력업체까지 확대하면 그 비율은 82.4%로 급증하며, 3차 공급망까지 포함할 경우 99% 이상의 기업이 해당 위험과 연결됩니다.⁴⁴⁾ 아동 영향 식별은 자사 사업장을 넘어 원료 채굴부터 폐기에 이르는 가치사슬 전 단계로 확장되어야 하며, 이를 확인하기 위한 제도적 절차가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공급망 단계	구체적인 영향 내용	영향 확인 절차 보유	실사와 절차의 구체적 내용
	[서술형 지표 작성] 예: 원료 채굴 단계 → 협력사 아동 건강 위험 유통 단계 → 배송 차량 대기오염 인근 학교 영향	예/ 미설정/ 계획 중	[서술형 지표 작성]

※ 아동권리 선도 기업으로 나아가기 I 1차 협력사를 넘어 2·3차 공급망 범위까지 실사 절차에 포함한다.

3.4.3. 산업에 특화된 아동 영향 관리 목표·핵심성과지표(KPI) 설정

기업의 사업 활동이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은 업종마다 그 경로와 영향의 크기가 다릅니다. 예를 들어, 광업은 지역사회 환경오염과 아동 건강권 침해로, 식음료 분야는 아동 대상 마케팅과 영양권으로, 정보통신기술 분야는 온라인 안전과 데이터 권리, 금융은 투자 포트폴리오를 통한 간접 노출로 각각 상이한 아동권리 위험을 발생시킬 가능성이 높습니다.⁴⁵⁾

이처럼 영향의 성격이 업종마다 다르기에 기업이 속한 산업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설정한 일반적인 목표는 실질적인 아동 보호와 아동권리 보장으로 이어지기 어렵습니다. 또한 기업의 일시적인 사회공헌 활동은 기업 운영에서 발생하는 부정적 영향을 상쇄하지 못하며, 아동권리를 보장하는 근본적인 개선을 이끌어내지 못합니다.⁴⁶⁾

따라서 식별된 영향 항목이 실질적 변화로 이어지려면 자사 산업 특성에 근거한 정량 목표와 핵심성과지표(KPI)를 설정하고 이행 현황을 체계적으로 추적해야 합니다. 이는 국제 규범이 이미 요구하는 방향이기도 합니다. 유엔 기업과 인권 이행원칙(UNGPs)은 인권 실사를 ①영향 식별, ②조치 통합, ③이행 추적, ④공개와 보고의 4단계로 규정하며, 영향을 파악하는 데서 멈추지 않고 모니터링과 검토를 포함한 순환 프로세스 전체를 기업의 의무로 명시합니다. 유럽연합의 기업 지속가능성 보고 지침(CSRD)은 한걸음 더 나아가 사업모델과 전략, 이사회 및 경영진의 역할, 리스크 관리 전반에 걸쳐 관련 지표를 포함한 공시를 의무화하고 있으며, 공시 정보는 과거 실적과 미래 계획을 아우르는 정성적·정량적 정보를 모두 포함하도록 요구합니다.⁴⁷⁾ 유럽연합의 기업 지속가능성 실사 지침(CSDDD) 부속서는 아동권리협약상 건강권, 교육권, 적절한 생활수준에 대한 권리를 포함한 아동권리 전반을 실사 의무 적용 대상으로 포괄하고 있습니다.⁴⁸⁾

⁴⁴⁾ C. Görg et al., "Supply Chain Due Diligence Risk Assessment for the EU," European Commission, (2023).

⁴⁵⁾ Global Child Forum & Boston Consulting Group, The State of Children's Rights and Business 2023 (2024). 해당 보고서는 1개 업종을 아우르며, 각 업종이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의 성격과 크기가 다르기 때문에 Workplace, Marketplace, Community & Environment 영역에 업종별 상이한 가중치를 적용합니다.

⁴⁶⁾ Collins, T.M. & Gibson, S.W., "How Businesses Can Assess the Impacts of Their Charitable Activities on the Rights of Children and Youth," Youth, 3, 913 - 934 (2023),

⁴⁷⁾ DIRECTIVE (EU) 2022/2464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4 December 2022 amending Regulation (EU) No 537/2014, Directive 2004/109/EC, Directive 2006/43/EC and Directive 2013/34/EU, as regards corporate sustainability reporting

⁴⁸⁾ Directive (EU) 2024/1760 (CSDDD), Annex, Part I

아동권리는 기업의 선택적 배려의 대상이 아니라 측정하고 관리하고 보고해야 하는 영역입니다. 또한 기후위기 속에서 가장 취약하면서도 가장 목소리를 내기 어려운 존재가 바로 아동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산업 특성에 맞는 구체적인 목표와 핵심성과지표(KPI)의 설정은 아동권리 보호를 위한 출발점이자 기업이 책임을 다하고 있음을 입증하는 핵심 수단일 수 있습니다.

대상 아동 영향 항목	정량 목표	핵심성과지표(KPI)	기준 및 목표 연도	현재 현황/ 미설정 사유
위 항목에서 식별된 항목과 위험 기재	[서술형 지표 작성]	[서술형 지표 작성]	[서술형 지표 작성]	목표 달성 중/ 초과 달성/ 목표 미달/ 미설정

※ 아동권리 선도 기업으로 나아가기 I 정량 목표, 기준연도, 현재 현황을 모두 기재할 수 있다.

3.4.4. 연령 집단별 영향 차이 분석과 기후·환경 목표 설정

기후위기가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은 연령에 따라 다르게 나타납니다. 따라서 연령별 취약성의 차이를 인식하는 것에서 나아가 이를 바탕으로 한 목표와 그 목표를 추적할 수 있는 지표를 함께 갖추는 것이 필요합니다. Vergunst & Berry(2022)는 기후변화가 태아기부터 청소년기까지 발달 단계별로 서로 다른 경로로 누적 작용하며 장기적 불평등을 심화시킨다고 말합니다.⁴⁹⁾ 태아기에는 생물학적 손상과 신경발달 위험이, 영유아기에는 양육환경과 기초 발달 지연이, 학령기와 청소년기에는 재난 경험·학습 손실·기후불안 등이 주요 경로로 작용합니다. Health Effects Institute(2024)⁵⁰⁾와 EEA(2023) 역시 아동의 호흡 속도, 체중 대비 흡수율, 발달 중인 면역체계 등 생물학적 특성이 연령대별로 다른 수준의 취약성을 만들어낸다는 점을 확인합니다.⁵¹⁾ 영유아는 미세먼지·유해물질 흡수율이 높아 배출 저감 목표가 직접적인 보호 수단이 되는 반면, 청소년은 폭염·재난 시 기후불안과 정신건강 영향이 심화되어 심리 지원 프로그램과 같은 별도의 대응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연령을 구분하지 않는 일괄적 접근으로는 이러한 위험을 온전히 파악하고 완화하기 어렵습니다. 연령 집단별로 차별화된 목표와 지표를 설정하는 것은 실질적인 리스크 관리와 영향 완화로 이어지도록 하는 핵심 연결 고리가 될 수 있습니다.

연령 집단	주요한 기후 및 환경 위험 유형	차별적 영향 분석 내용	목표와 지표	기준 및 목표 연도	현재 현황/ 미설정 사유
영유아/ 초등/ 청소년	폭염/대기/오염/재난/ 유해화학/수질오염	[서술형 지표 작성] 예: 청소년- 폭염과 재난 시 기후불안 및 정신건강 영향 심화	[서술형 지표 작성] 예: 기후불안인 청소년 대상 심리 지원 프로그램 연 x회 운영	[서술형 지표 작성]	진행 중/ 달성/ 달성 및 유지/ 미분석/ 미설정

※ 아동권리 선도 기업으로 나아가기 I 영유아(만 0~5세), 학령기 아동(만 6~12세), 청소년(만 13~18세)의 3개 연령군별 분석 및 목표를 서술할 수 있다.

⁴⁹⁾ Vergunst, F., & Berry, H. L. (2022). Climate change and children's mental health: A developmental perspective. *Clinical Psychological Science*, 10(4), 767 – 785.
⁵⁰⁾ Health Effects Institute. (2024). State of global air 2024. HEI.
⁵¹⁾ European Environment Agency. (2023). Air pollution and children's health. EEA.

3.4.5. 취약 아동 교차 취약성 고려

Stein et al.(2024)에 따르면 장애 아동은 비장애 아동 대비 극단적 기상현상에 평생 5배 이상 노출되며,⁵²⁾ Parsons et al.(2025)은 저소득 가구 아동이 냉방·공기청정 등 기후적응 기술에 접근하지 못한 채 폭염·대기오염·홍수 피해를 고스란히 감당하고, 기후변화로 인해 이주하게 된 아동은 조기경보체계, 의료서비스, 식수 및 위생시설 등에 대한 접근성이 어려운 위치에 놓일 수 있다고 말합니다.⁵³⁾ 이처럼 취약 집단 아동은 기후·환경 위험에 더 많이 노출되면서도 적응 자원은 가장 부족한 이중의 불평등 구조에 놓여 있으며, 기업의 사업 활동은 대기오염·수질오염·온실가스 배출 등을 통해 이러한 불평등을 직간접적으로 심화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업은 교차 취약 집단 아동을 단순한 수혜 대상이 아닌 핵심 이해관계자로 인식하고, 이들에 대한 영향을 별도로 세분화하여 측정·관리하는 체계를 갖출 필요가 있습니다.

교차 취약 집단 유형	기업이 해당 집단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	설정된 보호 목표 및 대응 계획	현재 이행 현황 또는 미설정 사유
장애 아동/이주배경 아동/ 저소득 가구 아동	[서술형 지표 작성]	[서술형 지표 작성]	이행 중/ 계획 수립 완료/ 미설정

※ 아동권리 선도 기업으로 나아가기 | 장애·이주배경·저소득 가구 아동 중 2개 이상 집단을 고려한 보호 목표를 수립한다.

3.4.6. 지표 전반 수준과 개선 방향

앞서 확인한 내용들이 기업의 기후 대응 전략 안에 구조적으로 통합되지 않는다면, 그 활동들은 단발성 프로그램에 머물 가능성이 높습니다. 해당 지표는 기업이 지금까지 확인한 아동 관련 활동의 통합 수준을 스스로 평가하고, 현재의 한계와 개선 방향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도록 함으로써 D 지표 전반이 실질적인 전략 개선의 출발점이 되도록 합니다.

D 지표 통합 수준 평가	개선 방향
- 아동 취약성이 기후 및 환경 목표, 지표, 전략에 구조적으로 반영되어 있음 - 환경 교육과 캠프 등 활동은 있으나 해당 활동이 목표, 지표, 리스크 체계와 연결되지 않음 - 환경과 기후 전략에 아동 권리 주체 논의가 없음	[서술형 지표 작성] 현재 수준을 더 보완하기 위해 필요하고 기업이 실행할 수 있는 단기, 중기, 장기 개선 방향을 서술하세요

※ 아동권리 선도 기업으로 나아가기 | 단기·중기·장기 개선 방향을 시점별로 구분하여 서술할 수 있다.

⁵²⁾ M. A. Stein, P. J. S. Stein et al., "Advancing Disability-Inclusive Climate Research and Action, Climate Justice, and Climate-Resilient Development," The Lancet Planetary Health 8, (2024): e242 – e255.

⁵³⁾ J. Parsons, P. Coyte et al., "Climate Change and Inequality," Pediatric Research 98, (2025): 1238 – 1245.

[지표 D - 아동권리 관점 매핑표]

출처	조항 번호	조항 내용	아동권리와의 연관성
국제규범 - 아동권리 규범적 근거			
유엔아동권리협약 (UNCRC)	제6조	생존·발달권	기후변화·환경오염은 아동의 생존·발달에 회복불가능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 환경 영향이 아동 발달에 미치는 차등적·장기적 영향을 측정 가능한 지표로 관리할 규범적 근거임.
	제24조	건강권 (환경적 측면)	깨끗한 식수·환경위생·환경오염 위험 정보 제공 등 환경 측면의 건강권 보장 의무. 유럽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E2 등 환경 공시에서의 아동 영향 측정 근거가 됨.
	제27조	적절한 생활수준권	아동의 신체·정신·도덕적·사회적 발달에 적합한 생활수준 보장. 기업 활동이 아동의 주거·자연환경·생활공간에 미치는 누적·장기 영향을 측정·관리할 근거가 됨.
유엔아동권리위원회 일반논평 제26호 (CRC/C/GC/26)	(2023)	아동권리와 환경	일반논평 제26호는 기후변화·생물다양성 손실·오염이 아동권리에 미치는 영향을 명시하고 국가·기업의 의무를 적시. 환경 영향 평가에 아동 차등 영향(연령·발달단계·취약성) 반영 의무의 직접적 근거임.
아동권리와 경영원칙 (CRBP)	-	미래 세대 환경 지원 책임	① 온실가스 점진적 감축, ② 지속가능 자원 이용, ③ 재난 위험 예방·완화, ④ 지역사회 기후적응 지원을 기업 의무로 명시하며, 이를 아동 취약성 관련 핵심성과지표(KPI) 설정의 규범적 근거로 활용함.
공시기준 - 보고·평가 프레임워크			
글로벌 보고 이니셔티브 (GRI)	2-6	활동, 가치사슬 그리고 기타 비즈니스 관계	환경영향 발생 가치사슬 단계(원료 채굴·생산·물류·소비자 사용·폐기) 식별. 각 단계의 환경 영향이 아동·취약계층에게 어떻게 차등적으로 작용하는지 평가의 출발점이 됨.
	2-25	조직이 기여한 부정적 영향을 해결하기 위한 프로세스	환경 측면에서 발생한 부정적 영향 해결 절차. 아동·취약계층에 대한 차등 영향이 별도 식별·해결되는지를 평가함.
	3-3	중요 이슈 관리	환경 이슈가 중대 이슈로 도출된 경우 그 관리 방식 공시. 아동·미래세대 영향이 환경 이슈 관리 체계에 반영되었는지 평가함.
	201-2	기후변화의 재무적 영향과 사업활동에 대한 위험 및 기회	기후변화의 재무적 영향 공시. 아동(미래 소비자·노동자·기업 리더)에게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기업의 재무·사업 위험·기회로 식별되는지 평가함. 세대 간 영향이 재무·전략 차원에 통합되는지가 핵심임.
	304-2	활동·제품·서비스가 생물다양성에 미치는 중대한 영향	생물다양성 영향 공시. 생태계 손실은 아동·미래세대의 자연 환경권·발달 환경에 누적적 영향. ESRS E4 및 유엔아동권리협약 일반논평 제26호(CRC/C/GC/26)과 연계됨.

글로벌 보고 이니셔티브 (GRI)	306-1	폐기물 발생 및 폐기물 관련 주요 영향	폐기물 발생량 및 영향 공시. 폐기물 처리 시설 인근 지역의 아동·취약계층 환경 노출 영향이 식별되는지 점검함.
	306-2	폐기물 관련 주요 영향 관리	폐기물 영향 관리 방식 공시. 폐기물 영향 관리 시 아동·지역사회 차등 영향 완화 조치가 포함되는지 평가함.
	308-2	공급망 내 부정적인 환경적 영향 및 이에 대한 조치	공급망의 부정적 환경 영향 공시. 공급망 단계의 환경 영향이 해당 지역 아동·취약계층에게 미치는 차등 영향 평가의 근거임.
유럽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ESRS)	IRO-1	지속가능성 이슈의 영향·위험·기회를 식별 및 평가하는 프로세스	환경 영역의 이중중요성 평가 프로세스. 유니세프의 ESRS 가이드언스는 농약·화학물질 노출 등 회복불가능 영향을 중요성 평가에 반영하도록 규정함. 아동 영향이 별도 평가 차원으로 다루지는지가 핵심임.
	E1-1	기후변화 완화를 위한 전환 계획	전환 계획 공시: 오늘의 기업 의사결정이 아동과 미래세대에 장기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인식하고, 전환 계획에 세대 간 형평성과 미래세대의 권리를 반영하였는지를 평가함.
	E1-2	기후변화 완화 및 적응에 관한 조직의 정책	기후 완화·적응 정책 공시. 아동의 기후 취약성(폭염·대기오염·재난)이 정책 차원에서 인식·반영되었는지 평가함.
	E1-3	기후변화 완화 및 적응에 관한 조직의 계획, 자원, 예산	기후 대응 자원·예산 공시. 정책 선언이 조직의 자원 배분으로 전환되는 단계로, 아동 영향 완화에 대한 자원 배분이 명시되는지 확인함.
	E1-4	기후변화 완화 및 적응과 관련한 조직의 목표	기후 목표 공시. 아동 보호 관점의 정량 목표(예: 학교·아동시설 인근 대기질 목표, 아동 거주지역 적응 목표)가 설정되는지 평가함.
	E1-6	Scope 1, 2, 3 및 총 온실가스 배출량, 매출액 기준 온실가스 배출량 원단위(집약도)	온실가스 배출 공시. 미래세대 영향의 핵심 지표로서, Scope 3까지 측정·공개하는지가 세대 간 책임 이행 여부의 척도임.
	E1-9	중대한 물리·전환 위험으로 인한 재무영향, 기회요인으로 인한 재무영향	기후 위험의 재무 영향 공시. 아동을 포함한 미래세대 영향이 장기 재무위험으로 인식·통합되는지 평가함.
	E2	대기·수질·토양 오염 영향 및 관리	대기·수질·토양 오염 공시. 유니세프의 ESRS 가이드언스는 아동이 오염·독성물질 노출에 구조적으로 취약함을 명시하며 연령별 목표치 설정을 권고함.
	E3	수자원 사용·영향 및 관리	수자원 영향 공시. 깨끗한 식수 접근(유엔아동권리협약 제24조)은 아동 건강의 핵심 결정요인. 수자원 영향 관리에 아동 건강 영향이 통합되는지 확인함.
	E4	생물다양성·생태계 영향 및 관리	생물다양성 영향 공시. 생태계는 아동을 포함한 미래세대의 발달·생활 환경의 기반. 생물다양성 손실의 세대 간 영향이 인식·관리되는지 점검함.

유럽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ESRS)	E5	자원사용·자원순환 영향 및 관리	자원순환 영향 공시. 자원 고갈·폐기물은 미래세대의 자연자원 이용 가능성에 직접 영향. 순환경제 전환의 세대 간 형평성 차원이 반영되는지 평가함.
	S3-1	지역사회 환경·안전·보건·인권 영향에 관한 조직의 정책	지역사회 환경·안전·보건 영향 정책 공시. 폭염·대기오염·재난이 지역사회 아동에게 미치는 차등 영향이 조직 정책에 반영되었는지 점검함.
국제회계 기준 기후 관련 공시 (IFRS S2)	전략	기후 위험 및기회의 사업·전략·재무계획 영향 (단·중·장기, 사업·전략·재무 영향, 시나리오 분석)	기후 전략의 시간축 분석. 아동은 현재 진행 중인 기후 위기에 이미 노출되어 있으며, 동시에 장기적 영향을 가장 오래 짊어질 세대임. 단·중·장기 분석과 시나리오 분석에 아동이 받는 영향이 고려되는지 평가함.
	위험관리	기후 리스크 식별·평가·관리 절차 및 기업 전반적인 위험관리 프로세스에 통합	기후 위험 관리 절차 공시. 아동은 기후위기로 인한 건강·교육·생계 피해를 현재 시점에서도 경험하고 있으며, 미래에는 그 피해가 더욱 누적됨. 이러한 현재와 미래의 차등적 위험이 평가 항목에 포함되어 전사 리스크 관리에 통합되는지 평가함.
	지표 및 목표	기후 평가·관리 지표, GHG 배출량, 목표 및 성과	기후 지표 및 목표 공시. 아동의 기후위기 취약성을 반영하여 기후변화와 관련된 현재와 미래의 위험과 기회를 평가하기 위해 측정 가능한 지표·목표로 연결되어야 함.

나가며

04+

나가며: 더 나은 ESG 보고서와 기후대응을 위해 기업이 할 수 있는 것

4.1.

활용법

본 가이드라인은 아동 권리 관점에서 기업의 기후 대응을 점검하는 동시에, 기업이 이미 보유한 데이터와 절차를 보다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 인사 부문의 안전보건 데이터, ▲ 환경 부문의 배출량·오염물질 측정치, ▲ 구매·공급망 부문의 인권실사 자료, ▲ 사회공헌 부문의 지역사회 관련 기록은 이미 기업 안에 축적되어 있으나, 부서별로 흩어져 있어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이라는 하나의 관점으로 묶어 살펴보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아동권리 지표를 매개로 부서 간 자료를 종합하면, 기업은 자사의 기후 대응이 아동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구조적으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 결과는 기존 공시 체계의 보고 품질을 한층 정교하게 높이고, 아동과 미래세대를 포함한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영향을 반영하는 보다 포용적인 공시 체계를 구축하는 데 기여합니다.

4.2.

가이드라인의 한계와 의의

지표 충족 여부가 기업의 자기보고에 의존하므로 형식적 충족과 실질적 이행을 구분하기 어렵고, 업종별 세부 기준을 제공하지 않아 영향 경로가 다른 업종 간 적용 적합도에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아동의 요구와 기업 수용성 사이의 긴장을 완전히 해소하지 못했습니다. 아동의 목소리와 원칙적 기후대응을 충실히 반영할수록 지표의 요구 수준은 높아지고 기업이 실제로 이행하기는 그만큼 어려워집니다. 반대로 기업이 수용 가능한 수준으로 지표를 설계하면 아동이 실제로 경험하는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와 요구를 충분히 담아내지 못합니다. 본 가이드라인은 이러한 간극을 완전히 해소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모든 지표를 한꺼번에 충족하도록 요구하기보다, 하나의 하위 기준에서 시작해 이행 범위를 단계적으로 넓혀가는 방식을 택함으로써 기업의 첫 진입 문턱을 낮추는 동시에 아동권리 보장이라는 방향성을 유지하고자 했습니다.

이러한 한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동권리 관점은 기업의 지속가능경영 전략을 차별화하는 요소로 작용합니다. 글로벌 투자자와 규제기관은 취약 이해관계자에 대한 영향 평가와 실사를 점차 핵심 요소로 다루며, 이 흐름 속에서 아동권리를 선제적으로 통합한 기업은 규제 대응 역량과 사회적 신뢰 측면에서 장기적인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아동을 위한 설계가 결국 모든 이해관계자를 위한 설계로 확장된다는 점에서, 아동권리 지표의 네 가지 영역(A. 거버넌스, B. 절차, C. 책임과 구제, D. 전략과 목표)은 기업의 ESG 전략의 완결성을 높이도록 돕습니다. 또한 본 가이드라인에 포함된 자가진단은 기업이 현재의 기후위기 대응 전략을 아동권리 관점에서 점검하고, 강점과 개선이 필요한 영역을 확인하여 향후 실행 방향을 모색하는 실질적인 도구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본 가이드라인은 완성된 기준이라기보다, 기업의 기후위기 대응에 아동권리를 통합하기 위한 첫 번째 제안이자 출발점입니다. 기업의 산업 특성과 경영 환경, 국내외 정책 및 규제 변화, 그리고 아동이 실제로 경험하는 기후위기의 영향이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있는 만큼, 지표 또한 이러한 변화에 맞추어 꾸준히 보완·발전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실제 지표를 적용하는 기업의 경험과 의견은 물론, 정부, 투자자, 학계, 시민사회, 아동·청소년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검토와 협력이 필수적입니다. 앞으로 본 가이드라인은 현장의 적용 결과와 이해관계자들의 피드백을 지속적으로 반영하여 실효성과 활용성을 높여 나가고, 기업이 보다 현실적으로 이행할 수 있으면서도 아동권리 보호라는 본래의 목적을 충실히 담아낼 수 있도록 계속해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부록] 점수표 - 아동권리 지표 기반 자가 진단용

자가 점검을 위한 점수표는 다음과 같이 구성하였습니다. A·B·C는 기본 지표로 하위 기준 1개 충족 시 10점을 부여하며, 14개 하위 기준 합산 최대 140점입니다. 예컨대 A 지표는 A1(5개)·A2(2개) 하위 기준으로 구성되며, 충족 항목 수만큼 각 10점이 누적됩니다. 도전 지표 D는 D1~D6, 6개 항목으로 구성되며, 항목별 내용을 자발적으로 기재할 때마다 10점씩 부여해 최대 60점을 가산합니다.

구분	하위 기준	점검 내용	점수	해당 여부
[기본 지표] ※ 하위 기준 1개 충족 시 10점, 최대 140점				
A1. 정책 거버넌스에 아동권리 명시	A1.1	아동을 기업의 주요 이해관계자로 명시(또는 선언)하고 있는가 ※세부 기준(택1 이상 충족 시 'Y'): - 이해관계자 정의·목록에 아동을 별도 항목으로 기재 - 지속가능경영보고서나 관련 정책 등에서 아동을 단독으로 명시 - 아동을 포함한 이해관계자 식별 절차 또는 근거 문서 보유	10	Y / N
	A1.2	제품·서비스의 기획·생산·유통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정적인 기후·환경 영향(온실가스 배출 등)이 아동의 건강·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정책에 반영하고 있는가 ※세부 기준(택1 이상 충족 시 'Y'): - 제품·서비스의 전과정 평가(Life Cycle Assessment, LCA) 시 아동 건강·안전 영향을 별도 항목으로 고려 - 기후·환경 영향 평가 절차에 영향받는 아동 권리 분석 포함 - 온실가스 감축 정책 수립 시 아동 건강 영향(대기오염·폭염·감염병 등)을 근거로 반영	10	Y / N
	A1.3	기업의 ESG 전략 및 정책은 아동노동 금지에 한정되지 않고 건강권·교육권 등 아동권리 전반을 포함하는가	10	Y / N
	A1.4	유엔아동권리협약(UNCRC) 또는 아동권리와 경영원칙(CRBP)을 정책에 반영하고 있는가	10	Y / N
	A1.5	아동 관련 이슈가 이사회·경영진 차원에서 공유·논의되고 ESG 감독 범위에 포함되는가	10	Y / N
A2. 중요성 평가에서 아동권리를 별도 이슈로 식별	A2.1	중요성 평가(또는 기후 리스크 식별·평가) 절차에서 기업의 환경 영향이 아동의 건강·안전·교육 등에 미치는 영향을 별도로 검토하고 있는가	10	Y / N
	A2.2	중요성 평가 결과 '기후위기 대응'이 기업의 중대 이슈로 도출된 경우, 해당 이슈가 아동 권리에 미치는 영향이 함께 명시되어 있는가 세부 기준(택1 이상 충족 시 'Y'): - 중요성 평가 결과 공시 자료(ESG 보고서·웹사이트 등)에서 기후 관련 중요 이슈가 아동 권리에 미치는 영향을 함께 서술 - ESG 보고서의 환경(E) 부문에 아동 권리 영향이 별도 단락·항목으로 서술	10	Y / N
B1. 이해관계자 참여 구조에 아동 포함	B1.1	기후·환경 전략 수립·중요성 평가에 아동 또는 대리인(보호자·학교·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구조를 갖추고, 참여 방식(인터뷰·간담회·설문·워크숍·자문위원회 등)을 구체적으로 공개하는가	10	Y / N

구분	하위 기준	점검 내용	점수	해당 여부
[기본 지표] ※ 하위 기준 1개 충족 시 10점, 최대 140점				
B1. 이해관계자 참여 구조에 아동 포함	B1.2	기후위기 대응 전략·리스크·목표를 아동이 이해 가능한 언어·형식(요약본·영상·FAQ 등)으로 별도 제공하고, 아동·보호자가 실제로 접근·이용 가능한 방식인가	10	Y / N
	B1.3	아동 관련 이해관계자 참여가 일회성이 아닌 정기적·구조적 프로세스로 운영되고, 수렴된 의견이 우선순위·정책 목표 수립에 반영된 경로를 설명하는가	10	Y / N
C1. 영향평가 체계에 아동권리 통합	C1.1	아동권리영향평가(CRIA) 또는 기업의 환경·인권영향평가에 아동권리를 통합하고, 전 사업장·활동에 적용하며, 기업의 환경·인권 실사에서 아동 또는 대리인 참여형 실사를 실시하는가	10	Y / N
	C1.2	사업장·자산이 학교·병원·놀이시설 등 아동의 생활반경과의 공간적 근접성을 식별·공개하고, 근접으로 인한 아동권리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는가	10	Y / N
C2. 아동권리 고충처리·구제 및 대응 역량 내재화	C2.1	기후재난·환경오염 피해 아동(또는 보호자)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창구(설문·인터뷰·캠페인 등)를 제공하고, 제기된 의견에 대한 답변과 처리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는가	10	Y / N
	C2.2	임직원(경영진 및 이사회 포함)이 기후위기 시대의 아동권리(안전·건강·의견 존중 방법)를 배우는 정기적·체계적 프로그램을 운영하는가	10	Y / N
소계			140	기관 점수 입력란

[도전 지표] ※ 하위 기준별 내용 작성 시 10점씩 부여, 최대 60점

D. 전략과 목표

1

기업 활동이 기후와 환경,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 분석

10

Y / N

① 영향 경로

☐ 직접 영향 ☐ 간접 영향 ☐ 해당 없음

② 구체적인 영향 내용

아동에게 발생하는 영향을 대상·성격·맥락을 포함해 서술

③ 대책 보유 여부

☐ Y (보유) ☐ N (미보유)

④ 대책 내용 혹은 미공개 사유

2

가치사슬 전반에서 아동 영향 식별

10

Y / N

① 공급망 단계 (해당 단계 모두 체크)

☐ 원료 채굴 ☐ 제조 ☐ 유통 ☐ 판매
☐ 기타: _____

② 구체적인 영향 내용

해당 단계에서 아동에게 발생하는 영향을 대상·성격·맥락을 포함해 서술

③ 영향 확인 절차 보유 여부

☐ 예 ☐ 미설정 ☐ 계획 중

④ 실사와 절차의 구체적 내용

구분	하위 기준	점검 내용	점수	작성 여부
[도전 지표] ※ 하위 기준별 내용 작성 시 10점씩 부여, 최대 60점				
D. 전략과 목표	3	산업에 특화된 아동 영향 관리 목표·KPI 설정 ① 영향 항목 D2번 지표에서 식별된 영향 및 위험 항목을 기재 ② 정량 목표 해당 영향 항목에 대해 수치로 표현 가능한 목표를 서술 ③ KPI 목표 달성 여부를 측정하는 핵심 지표를 기재 ④ 기준 및 목표 연도 기준 연도: _____ / 목표 연도: _____ ⑤ 현재 현황 및 미설정 사유	10	Y / N

[도전 지표] ※ 하위 기준별 내용 작성 시 10점씩 부여, 최대 60점

D. 전략과 목표

4

연령 집단별 영향 차이 분석과 기후·환경 목표 설정

10

Y / N

① 연령 집단 (해당 항목 모두 체크)

☐ 영유아 ☐ 초등 ☐ 청소년

② 주요 기후·환경 위험 유형 (해당 항목 모두 체크)

☐ 폭염 ☐ 대기오염 ☐ 재난 ☐ 유해화학물질☐ 수질오염 ☐ 기타: _____

③ 차별적 영향 분석 내용

해당 집단이 위험에 노출될 때 나타나는 고유한 영향을 서술연령

④ 목표와 지표

차별적 영향에 대응하는 구체적 목표와 측정 지표

⑤ 기준 및 목표 연도

기준 연도: _____ / 목표 연도: _____

⑥ 현재 현황 및 미설정 사유

[illegibl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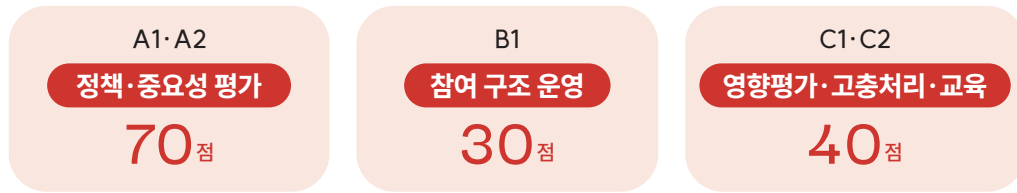
구분	하위 기준	점검 내용	점수	작성 여부
[도전 지표] ※ 하위 기준별 내용 작성 시 10점씩 부여, 최대 60점				
D. 전략과 목표	6	지표 전반 수준과 개선 방향 ① 통합 수준 평가 (택 1) 현재 기업의 아동권리-기후·환경 전략 통합 수준을 선택 ☐ 수준 1 아동 취약성이 기후·환경 목표·지표·전략에 구조적으로 반영 ☐ 수준 2 환경 교육·캠프 등 활동은 있으나 목표·지표·리스크 체계와 미연결 ☐ 수준 3 환경·기후 전략에 아동을 권리 주체로 다루는 논의가 없음 ② 개선 방향 현재 수준을 기준으로 기업이 실행 가능한 개선 방향을 단계별로 서술 	10	Y / N
소계			60	기관 점수 입력란
총계			200	기관 점수 입력란

총점 200점을 기준으로 기업의 현황을 세 단계로 진단합니다. 1단계 인식(0~80점)은 아동권리를 권리 주체의 관점에서 인식하기 시작한 출발 단계로, 거버넌스와 정책 기반 마련이 우선 과제로 남습니다. 2단계 이행(81~140점)은 기본 지표 전반에 실행 체계를 구축해 가는 단계로, 이해관계자 참여·고충처리·교육·실사 절차의 내실화가 핵심 과제입니다. 3단계 선도(141~200점)는 기본 지표를 대부분 충족하고 도전 지표까지 기업의 환경 전략과 목표에 내재화한 상태로, 산업 표준을 견인하는 위치에 해당합니다.

점수 산정 및 진단 분류

01 기본 지표 (최대 140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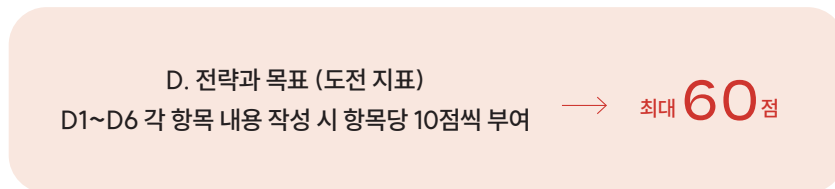
5개 항목 14개 하위 기준 합산 · 하위 기준 1개 충족 시 10점



기본 지표 14개 하위 기준 합산 · 하위 기준 1개 충족 시 10점 · 최대 140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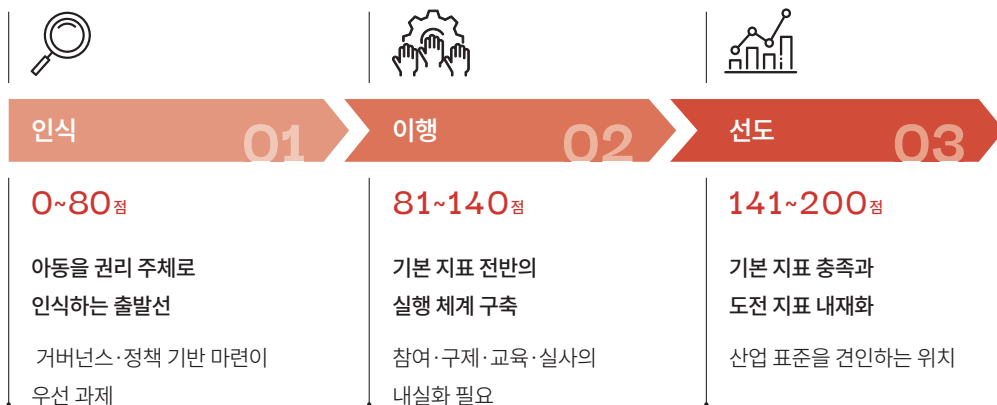
02 도전 지표 (최대 60점)

도전 지표는 항목별 내용 작성 시 점수가 부여되므로, 산업 특성에 맞는 자발적 기재를 장려함



03 기업 자체 진단 분류 (총점 200점 기준)

구간은 기본 지표(140점) 달성 여부를 기준으로 설정



ESG 기후위기 대응 아동권리지표 가이드라인

발행월	2026년 8월	
발행	세이브더칠드런 코리아	
공동 개발	세이브더칠드런 어셈블 녹색전환연구소	
문의	세이브더칠드런 코리아 서울특별시 마포구 토정로 174 Tel. 02-6900-4400 Homepage. https://www.sc.or.kr	녹색전환연구소 서울특별시 중구 중림로7길 4, 2층 Tel. 02-2135-1148 Homepage. https://igt.or.kr
편집 및 인쇄	디자인빛	

© 2026 Save the Children Korea. All rights reserved.

※ 본 가이드라인은 아동을 보호의 대상이 아닌 기후위기 대응의 권리 주체이자 핵심 이해관계자로 존중한다는 원칙 아래,
세이브더칠드런 어셈블 청소년들이 기업의 기후위기 대응에 아동권리가 반영되어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제안하고,
지표 개발 및 가이드라인 제작 과정에 공동으로 참여하여 개발되었습니다.

※ 본 가이드라인의 저작권은 세이브더칠드런 코리아에 있습니다.

※ 본 가이드라인은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받는 저작물로, 저작권자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전부 또는 일부를 복제, 배포, 전제, 전송하거나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내용을 수정·편집하여 2차적 저작물을 작성하는 등 일체의 무단 이용을 금합니다.



본 인쇄물은 FSC®인증 용지와 콩기름 잉크로 제작하였습니다.

세이브더칠드런 어셈블

ESG 기후위기 대응 아동권리 지표 가이드라인



세이브더칠드런